

NSL.1.34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자료집]

일 시 : 1992년 11월 28일 오후 4시 30분
장 소 : 기독교회관

주 쇄 : 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회,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국대학사노동조합, 서울대대학원자치회협의회, 진보적 사회대개혁안 준비위원회

후 원 : 전국대학원생대표자협의회, 전국민중교육단체협의회(주)

시민대토론회 진행순서

민중의례

인사말

참가단체 소개

토론회

1부 [기조발제]

민주대개혁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의미

- 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회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 조 국 (울산대 법학과 교수)

사상의 자유와 양심수

- 서준식 (전 전국연합 인권위원장)

2부 [토 론]

토론자 :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민중교육단체협의회(추),

민중후보선거운동본부

3부 [자유토론]

결의문 낭독

폐회사

| 참여연대 인권 자료실 | | |
|-------------|------|------|
| 등록일 | 분류기호 | 자료번호 |
| | | |

자료집 목차

민주대개혁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의미

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회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조 국 (울산대 법학과 교수)

사상의 자유와 양심수

서준식 (전 전국연합 인권위원장)

91년 양심수 현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제 7차 총회보고서

장기복역 양심수의 실태와 문제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제 7차 총회보고서

사상의 자유에 대한 재검토

인권과 정의 제 192호

민주대개혁안에서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의의

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회

1. 머릿말

동서냉전체제의 종식으로 21세기를 앞둔 오늘날 전세계는 화해와 평화의 흐름으로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남북관계 또한 남북합의서의 채택, 발효 등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등 국민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확보하며 민주와 통일을 향한 전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14대 대통령선거는 오랜기간 동안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짓눌려온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회복하고 사회의 개혁을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이다. 사회 곳곳에서 정권교체와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개혁의 요구를 하나로 모아내는 것이 당면한 과제로 나서고 있다. 이에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은 민족민주운동의 대표체로서 이러한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를 집약시켜 민주정부를 수립하고자 오래전에 민주대개혁안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민주적 개혁을 이루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악법개폐, 억압통치기구의 해체, 양심수의 전원석방은 사회개혁의 출발이고 초석을 이루는 과제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46년 제정 이후 심각한 인권유린의 수단으로, 정권안정과 재집권을 위한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써 활용되어 왔던 바 이의 폐지를 요구하는 각 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은 민주대개혁안에서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를 제출하였으며 이것은 민주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대다수의 요구에 철저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민주대개혁안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향후 철폐운동의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2. 민주대개혁안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의의

1) 국가보안법의 기본성격과 폐지의 근거

① 국가보안법은 반민주 악법이다.

우리나라는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와 양심, 종교, 학문, 예술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현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법인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리는 지속적으로 억눌려왔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는 민주화를 지향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탄압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가령 어떤 사회현상을 보고 그 문제의식을 인식하면서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내심네 형성되는 사상을 탄압하고 (83년 속칭 의식화 세미나사건, 73년 속칭 일기장 사건) 또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는 (87년 실천지침사건, 87년 늑두서평사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국민의 기본권리는 철저히 무시당할 수 밖에 없으며 민주적 개혁이 쪽을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② 국가보안법은 반통일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남북이 대결하고 경쟁해왔던 냉전시대에 침략과 도발의 위협성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남과 북은 남북합의서를 체택, 발효시켜 대결과 반목의 시대를 청산하고 화해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약속하는 등 남북관계의 진전을 점차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통일과 화해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이것은 통일의 일주체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을 원초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별 관심이 없는 한 기금까지의 통일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크게 신뢰를 갖지는 못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은 반국가단체와의 약속과 합의인 것으로 서로 상대방을 적대시하면서 어떻게 통일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북한의 주민 모두가 처벌해야 할 범죄자가 되는 상태에서 철도를 잊고 항구를 개방한다고 해서 교류의 자유나 신뢰의 회복이 가능할리는 없는 것이다.

③ 국가보안법은 우리사회의 변혁을 추구하는 민중운동을 탄압하는 반민족 법률이다.

민중은 이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기에 집권세력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집권세력은 민중운동을 탄압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기구로서 국가보안법이 활용되어왔다. 더욱이 6공화국들이 국가보안법을 통한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은 더욱 거세졌는데 90년 <경수노련> <인천지역 민주노동자동맹> 등등 숱한 조직사건들로 노동운동가들을 대량 구속시킨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3. 현시기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의의

첫째, 민주대개혁 실현의 초석이 된다.

국가보안법 폐지없는 민주대개혁은 속빈 강정이다. 각종 악법의 철폐나 안기부, 기무사의 해체 등 민주정부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당연히 핵심적 지위를 갖는다.

세계의 냉전대결구도의 해소과 진전되는 남북관계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조건이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민주정부 수립투쟁은 이와 관련하여 관건이 아닐 수 없다.

둘째,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은 조국통일의 전도를 밝게하는 지름길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통일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듯하다. 북방정책과 함께 통일정책은 6공화국 최대의 치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책 변화에 앞서 우선 살펴야 할 것은 6공화국 정책과는 무관하게 국제정세의 변화속에서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6공화국 정부는 남북합의서의 채택, 발효, 남북핵통제 위원회의 구성 등 평화 통일의 전제를 마련하는 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 업적은 국가보안법의 계속적 존재로 인하여 통일시대로 나아감에 있어서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합의서 등 기간의 이루어진 성과를 우리 것으로 하고 통일의 문턱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 선결적 과제로 제기된다. 현재 대선을 앞두고 각 당도 이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있으나 민자당의 개정안이나 민주당의 대체입법론은 이점에서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만이 진전되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통일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없는 합의서 이행은 암초를 앞에 두고 배의 순항을 고집하는 것과 같다.

셋째,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각종 공안선거기도 등 정권유지의 수단을 막아나섬으로서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관건이다.

이번의 소위 “조선노동당 남부지역당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역대로 선거때만 되면 대형 간첩단사건이 단골메뉴로 등장하였다. 국민의 잠재된 반복, 반공의식을 부추기고 안정심리를 조장함으로써 여당의 승리를 이루는데 국가보안법은 훌륭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안선거 기도를 무력하게 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4.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토론회의 취지도 그러하듯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쟁점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상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선전사업과 여론을 확산 시켜야 할 것이다.

(1) 국가보안법 알기 운동

국가보안법이 최대의 파쇼악법이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상 이 악법이 나를 어떻게 억압, 유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 막연한 국가보안법 반대가 아닌 자신의 삶을 왜곡시키지 않기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 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알기운동은 국가보안법의 성격과 악랄성을 명백히 아는 것과 더불어 미국과 사대역적 무리들의 반민주성을 깨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① 방도

국가보안법 조문에 대한 선전과 이의 부당성에 대한 기획해설을 진행하며, 국가보안법의 위법성을 실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면

② 형태

사진전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된 인사의 사진과 남과 북의 총리가 악수하

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모아 전시.

강연회

토론회(대인 토론 포함)

기타

(2) 국가보안법 반대운동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공감을 대중적으로 얻고 실천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최대한 합법성을 띠면서 전개해야 한다. 합법성이 보장될수록 대중들의 자연스러운 참여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 운동은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운동과 뗏지달기 운동 등 다양하고 풍부한 대중운동 형태를 창발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3) 국가보안법 무시하기 운동

국가보안법은 합법성이 전혀 없는 파쇼악법이다. 입법권이 없는 국가보위법회의에서 제정한 국가보안법은 위헌, 무효이다. 그렇기에 국가보안법을 무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각급 단위에서 대중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한 국가보안법 무시하기 운동을 펼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대중들의 광범한 참여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에서 무시하기 운동은 전개되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 찾기를 기본으로 하여 투쟁을 상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4) 북한바로 알기운동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이북에 대해 아는 것 조차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반북반공이데올로기 공세에 무방비 상태로 있는 대중들에게 이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은 통일의지를 높이고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을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

북한바로알기 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는데 있어서 이북의 각 지역에 대해 인구, 면적, 주산물, 생활방식, 관습, 설화나 전설, 산업구성, 의식주 등에 대하여 알아나가는 것도 좋은 방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양심수 석방 돕기운동

국가보안법과 파쇼독재기구에 의하여 수많은 양심수들이 독재정권의 족쇄에 묶여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쇠창살에 갖힌 양심수들을 석방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는 것은 이들에 대한 의리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높일 수 있다.

국가보안법

- '친미반공분단체제' 수호의 도구, 진보운동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도구

조 국
(울산대 법학과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1. 머릿말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을 겪고 등장한 노정권은 초기에는 '권위주의 통치의 청산'을 내세우며 유화조치를 폈었으나, 이는 '사이비개량화'에 불과하였다. '제5공화국' 하에서의 법현실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삭히기 위해 국회 내에 1988년 6월 27일 소위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국보법 개폐가 목전에 다가온 듯 했다. 그러나 민중운동의 성장에 주춤했던 현정권은 문복사 방북 이후 '공안정국'을 주도하면서 국보법을 소생시켰다. 이후 세계적으로 탈냉전이 개시되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고 '남북합의서'를 채택하는 등 외적 조건이 급변하고, 남한 내부로는 진보운동의 성장과 국보법 철폐투쟁에 따라 국보법은 다시금 그 기초가 흔들리게 되었다. 이리하여 대선 이후 국보법 개폐의 전망이 열리는 듯 했으나, 난데없는 '간첩단사건'으로 국보법 철폐 문제가 주춤거리고 있다. 민자당은 아예 국보법 철폐를 언급도 하고 있지 않으며, 민주당은 '민주질서보호법'이라는 대체법안을 주장하며 "이기는 반공"을 주창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도 남한의 감옥 안에는 '노동해방'을 지향하는 많은 노동운동 조직사건 관련자들과 통일투쟁인사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몸으로 있으며, 또한 수많은 활동가들이 동법 위반혐의로 수배상태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하에서는 국보법의 각조문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국보법에 대한 진보운동의 입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민중운동에 대한 전방위적(全方位的) 탄압도구, 극우·파쇼의 상징—국가보안법

(1) 현행 국보법은 일제하의 '치안유지법'을 확대증보하여 제정된 이후(1948. 12. 1) 수차례의 개정과 통폐합을 통해 처음 6개조의 간단한 법은 현재의 거대법률로 강화되어 왔고, 이 속에서 법정형(法定刑)은 항상 상향조정되고 처벌대상 행위유형은 매번 확장되어 왔다. 그리고 그 제정, 개정과정은 '2.4보안법 파동', '국가재건최고회의', '국가보위법회의'에 의한 개정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

린한 것이었다.

이렇게 제정된 국보법은 먼저 통일의 일 주체인 북한을 '반국가단체'(제2조)로 규정함으로 해서 원천적으로 자주적 민족통일을 거부해왔고, 남한 사회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 그리고 '민중주권'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진영 일체를 '빨갱이'로 낙인찍고 '반국가단체', '이적단체'(제7조 제3항)등으로 탄압해왔으며, 특히 그 속에서도 '노동해방',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목숨까지 빼앗는 최고의 탄압을 가하였다.

그리고 판례는 제3조의 반국가단체의 구성, 가입죄를 범죄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과 동시에 범죄도 완성하는 '즉시범'(即時犯)으로 해석함으로써,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기 이전의 단계인 '구성', '가입' 자체를 처벌함에 따라 '사상처벌법'으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다. 즉 현정권은 시민이 특정 사상을 '소지'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하는데, 특정 사상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발언, '금서'의 소지 '독서', 특정 단체에의 '가입' 등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특정 사상에 동의한 사람들의 '결사'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며, 그 단체가 활동을 개시하지 않더라도 '가입' 그 자체만으로 처벌된다(1992년 1월경에 일어난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사상통제법은 근대 시민형법의 기본원리마저 부정하고 인간의 내심(内心)까지를 국가가 통제하려는 파쇼적 '심정형법'(心情刑法)이라 하겠다.

그리고 판례는 제4조 제1항 제2호의 '국가기밀' 개념을 "대한민국에서 자명하고도 당연한" 사실,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상식에 속하는 것", "국내에서는 신문, 라디오 등에 보도되어 공지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가기밀'에 포함시켜 국보법을 무차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1967년 8월 29일 판례는 "남한에서는 쌀값은 시시로 변하고 농촌에서도 돈만 있으면 물건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돈있는 사람은 잘 살고 돈없는 사람은 못산다"라는 발언을 '국가기밀'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임수경씨는 1989년 7월 평야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여 "전대협은 19개 지구와 특별 기구로 구성되며 19개 지구대표가 정책을 결정한다. 전대협의 동원능력은 3만명이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려우며 등록금 부담이 크다. 대학생들은 민중들과 연대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북한 바로 알기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발언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국가기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국보법은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제4조 제1항 제6호), '친양', '고무', '동조'(제7조 제1항)등의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처벌의 폭을 넓히고 범집행자에게 범해석을 맡겨버리는 '백지형법'(白紙刑法)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제7조 제1항은 정치사건은 물론이고 학문연구, 예술창작, 그리고 심지어 시민의 일상적 발언에까지 광고 들어가 제재를 가하였다. 예를 들어 "6.25 도발은 소련놈과 미국놈의 책임에 의한 것이다", "공산주의의 목적은 나쁘지만 그 방법은 나쁘지 않다", "호지명, 트랑방트라 등 베트남의 공산당 지도자는 오로지 공(公)만을 위하여 일한 사람이므로 그 군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경우, 전문적인 우표수집가가 북한의 선전문구가 있는 우표를 매수·취득한 경우 등에도 유죄가 인정되었다. 또한 유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포·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가옥을 철거하려는 철거반원에게 "김일성이 보다 더 한 놈"이라는 언사를 한 경우, 경찰관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면서 "우리나라 법이 빨갱이법보다 못하다"라고

빌언한 경우, “예비군훈련이 지긋지긋하다. 안받았으면 좋았다. 내일 판문점관광을 가는데, 그 곳에 가서 북으로 넘어가 버리겠다”하며 객기어린 농담을 한 경우, 술자리에서 상대방에게 “너는 김일성이 만큼 잘하느냐, 현정부가 무얼 잘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말한 경우, 재일동포 유학생이 “북한이 남한보다 중공업이 발달되어 있다”는 말한 경우 등이 있었다. 이 속에서 우리 사회는 말한마디도 조심해야 하는 통제사회가 되었고, 민중들의 뇌리 속에는 ‘사상공포증’, ‘빨갱이 콤플렉스’, ‘반복이데올로기’가 강제이식되어 ‘진보이념’과 민중의 결합을 봉쇄하는 효과를 낳았다.

한편 국보법은 법체계상으로는 헌법의 하위 법률이지만 실상 헌법보다 상위에 군림하면서, 현행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고 언명한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및 허가·검열제의 불인정 등을 철저하게 유린하였다. 국가보안법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동법의 적용에서는 [불법연행-->‘특별시설’에서의 장기구금 및 고문-->자백-->국가보안법 적용]의 과정이 사건마다 되풀이되었고,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 대공파, 시경 대공파 요원들의 경쟁적 수사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는, 유죄자백을 할 때까지 구타, 잠안재우기, 물고문, 전기고문, ‘비녀꽂이’, ‘통닭구이’ 등의 살인적 고문을 받게 된다. 여기서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불법연행 금지, 고문금지, 목비권 보장 등의 ‘신체의 자유’ 조항 및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 등등의 휴지조각에 불과하였다. 이 후에는 이 자백에 근거하여 검사의 기소가 행해지고, 검사의 공소장을 몇 문구만 수정하여 판사가 유죄판결을 내리게 된다.

요컨대 국보법이 수호하려는 것은 바로 ‘친미반공분단체제하의 자본주의’인 바, 국보법은 이러한 질서로부터의 사소한 일탈도 통제해왔다. 이 속에서 국보법은 헌법적 기본권도 무시한 채 일체의 민중운동을 탄압하는 반민주·반민중적 법률이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민중적 통일운동은 금압하는 반통일법률이며, 체제옹호사상만을 강제하며 시민의 내심에까지 국가가 간섭하는 극우·파쇼적 심정형법임이 밝혀졌는 바, 무조건적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2) 현재 국가보안법은 이전보다 벅찬 상대를 맞이하고 있다. 즉 80년 후반 이후 전면적으로 부상한 ‘변혁적 사회주의운동’과 문복사 방북 이후 국내외적으로 전개되는 ‘아래로부터의 통일운동’이다. 우리 시대의 최후·최고의 금기가 깨어지는 상황에 국보법은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다.

1989년 문의환 목사, 임수경양, 문귀현 신부 등의 방북, 1990년 ‘범민족대회’의 개최, 1991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등으로 금압되어 있던 통일운동의 물꼬가 터지고 ‘분단이데올로기’에 금이 가자 국보법은 이를 막는데도 힘을 쓸고 있다. 그러나 국보법의 존재는 1988년의 ‘7.7선언’과 1991년의 9월 18일의 유엔동시가입, 그리고 1991년 12월 12일의 ‘남북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등 남북관계 진전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유엔헌장 제4조에 따르면 유엔가맹국의 자격조건은 국제법상의 주권국가로서 유엔헌장의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평화애호국’(peace-loving state)으로 되어있는 바, 북한은 더이상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제2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국가’이다. 그리고 ‘합의서’도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1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정문제에 간섭하지 아니

한다”(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반국가단체’, ‘적’이 아니고 ‘국가’이며 ‘평화애호국’임이 유엔과 남한에 의해 공포된 이상,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동조’(제7조 제1항), ‘이적단체’ 구성,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제7조 3항)등의 각종 조항들도 존립근거를 잃을 수 밖에 없다. 그러함에도 국보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현정권이 ‘흡수통일’ 아니면 통일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서있으며, 남북관계의 진전도 그 한도 내에서 진행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80년대 이후 사회주의운동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민중운동파의 결합을 이루어내자 국보법은 여기에 또 타격을 집중하고 있다. 사회주의운동이 전무하다 한 시기에 국보법은 주로 ‘민주주의운동’에 탄압이 주였지만, 이제 국보법은 ‘진짜 적수’를 맞이한 것이다. 즉 국보법은 점점 ‘사회주의탄압법’으로서의 모습을 보다 선명히하고 있다. 이리하여 1989년 말 이후 여러 사회주의정치조직들이 폐지되었는데, 실제 이 조직들은 북한에 대하여 사상적·조직적 독자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한을 이름하고 북한을 고무·찬양·동조한 것이 아니냐는 식의 논리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던 바, 이는 사상의 자유와 조직결성의 자유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 하겠다.

3. 민주당의 <민주질서보호법안> 비판

현재 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국보법 완전폐지가 아니라 ‘민주질서보호법’이라는 대체입법론을 주장하고 있다. 보수야당인 민주당으로서는 과거 국보법이 자신들의 반정부활동 마저도 탄압해왔고, 또 국가보안법에 대한 민중의 철폐요구에 조금이라도 부응해야만 자신들의 ‘민주투사’로서의 위신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보법 개폐를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보법의 완전철폐와 민중의 조직적 정치활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려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민중의 변혁적 진출과 사상의 자유 보장은 민주당 자신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 대체물을 마련하려는 것이다(현재의 ‘민주질서보호법안’은 89년 12월 4일 평민당이 제출한 법안을 계승한 것이다).

민주당의 법안은 ‘국가보안법’이라는 개별법률의 폐지를 전제로 했지만, 사실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민주질서보호법’이라는 세련된 이름으로 고친 것이다.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현행의 ‘반국가단체’ 개념을 대신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집단’(법안 2조 4,5항)이 자리잡았고, ‘이적단체’ 대신에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하는 조직이 자리잡았다(법안 제4조 2항). ②‘반국가단체를 이름으로 하는’이란 개념을 ‘국가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고치고 이를 5개 항으로 정리하여 명시했다(법안 제2조 2항).¹⁾ ③‘반국가단체 찬양·동조죄’가 ‘민주질서 위반의 죄’로 되었다(법안 제4조).²⁾

1) 동 법안에서 ‘국가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한다. 국가안전은, i) 국가존립과 ii)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안전을 의미한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i) 국회구성 및 정부선택권리, ii) 입법권의 국회기속과 법률의 헌법기속, iii) 행정 및 사법의 법률기속, iv) 복수정당제 인정, v) 사법권 독립 등 5개항이다(새 법안 2조 1,2항).

2)i) 대한민국의 국가로서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ii) 5개항으로 적시된 이른바 ‘헌법상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법안은 주로 국보법에 사용된 용어의 불명확성 그리고, 그로 인한 국가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방지한다는 수준에서만 국보법을 비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진보운동의 사상의 자유와 조직결성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민주질서', '국가안전' 등의 개념은 '반국가단체' 또는 그 '찬양·동조'보다 명확하고 국가권력의 자의적 해석을 막아줄 수 있는 개념인가? 아니다. 그리고 진보운동이 현재의 '자유주의'적 질서의 틀을 벗어나는 정치경제체제를 지향할 경우 이 지향은 '국가안전'과 '민주질서' 위해라는 명목으로 처벌될 것이다. 요컨대 민주당의 '민주질서보호법안'은 바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민주당의 '이중적' 입장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하겠다(4월 혁명 이후 혁신계와 민중운동, 통일운동의 성장을 규제하려한 1961년 민주당의 '반공임시특별법안'과 군사정권 하에서 "진정한 반공"을 위한 1966년 '국가안전유지법안'을 상기하라).

4. 국가보안법 폐지는 민중의 조직적 정치활동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 행위와 결부되어야만 한다.

우리 사회를 온통 지배해온 '빨갱이 콤플렉스' 때문에 근래까지 국가보안법에 대한 접근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었다. 대중에게는 '사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위험'하고 '불온'한 것으로 다가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고, 이와 함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왜곡되어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반공'의 틀 내에서만 존재의미를 갖는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80년 후반 이후 40년의 단절을 딛고 모습을 드러낸 진보운동의 이론과 실천에 의해, 그리고 수십년간 '전향'을 거부하고 감옥을 선택한 비전향좌의수의 행동에 의해 본격적인 접근을 요구받고 있다.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를 직시하면서도 왜 이들은 사회주의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 왜 이들은 엄청난 중형을 감수하면서도 민주주의자라는 자기규정 외에 사회주의자라는 자기규정을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적대적인 관계인가? '빨갱이'에게 인권은 필요없는 것일까? 자신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 그 이유만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은 정당한가? 등등의 질문이 우리 모두 앞에 던져져 있다. 국보법 철폐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생각컨대 국보법 철폐문제는 국보법이라는 명칭의 법률 하나가 없어지는 문제로만 파악되어어서는 안된다. 그러하다면 그것이 다른 대체입법으로 바뀌거나 또는 형법으로 흡수될 경우 무력해지고 만다. 진보운동이 국보법 철폐를 통해 행위를 재취해야 하는 것은 바로 민중의 해방사상의 자유와 그 조직결성·활동의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가 보장되는 가를 잣대로 하여 각 정당과 정치세력의 정체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발표자가 편저한 「사상의 자유」(살림터, 1992)의 제2장을 축약한 것이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폐기를 '선전'하는 행위, iii)이 같은 목적의 단체결성과 가입행위, 그리고 대북관계에서는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북한의 적대활동을 선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한다.

반민주적 '전향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서준식

나는 법원에서 선고받은 형기 7년을 다 복역하고도 사상전향거부를 이유로 보안감호처분을 받아 10년이라는 세월을 더 철창 속에서 보낸 후에야 출옥할 수 있었다. 이 석방은 첫째로 해외에서 17년이라는 실로 장구한 세월동안 기적과도 같이 전개되어온 석방운동과 둘째로 국내에서 급속히 강화되어온 민중역량이 확실히 성취해나가는 민주화의 과정에서 만신창이의 악법인 사회안전법의 비인도성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죽지 않고 성한 몸으로 바깥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보안감호소 최초의 비전향좌의사상범이 되었다. 이 사실에는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어떠한 비열한 수법을 써서라도 비전향자에게는 살아서 햇빛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70년대 이래 군사정권의 한결같은 방침이었다. 이 방침은实로 철저한 것 이어서 이를 위하여 그들은 전국에 수감된 비전향좌의사상범들에게 전향을 강요하는 짐승적이고도 조직적인 고문을 가했고 그리고 그들 말대로 "전향을 거부하는 늄들은 늙어 죽도록 쇠창살 속에 매장시켜버리는 법"인 사회안전법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것이다. 전향, 전향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전향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 말이 아니라 일본인들의 조어이다. 즉 전향이라는 개념은 만주사변을 거쳐 가속적으로 군국주의에 치닫던 일본제국주의가 우리의 독립운동을 포함한 반체제사상에 대하여 탄압을 히스테리칼하게 강화시키던 과정에서 점차 형성되어 1933년 '사법당국통첩'으로 최종적으로 확립된 일본제국주의의 발명품이다. 세계에서 거의 유례없는 이 일제시대의 광적인 사상탄압수단을 우리나라에는 지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관행적으로 이어받아 애지중지 떠받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 한국의 치안방법이 일제적 발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이런 류의 치안이란 단지 치안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인간의 궁지나 존엄을 철저히 파괴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전향이란 소극적으로는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일정한 생각이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실천하지 않겠다는 것을('반성문'이나 '각서'도 분명히 이 단계의 전향서 범주에 들어갈 것이다). 적극적으로는 자기가 간직하고 있던 생각이나 믿음은 잘못되고 사악한 것이며 앞으로는 체제에 충성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교도소에서 사상전향을 할 때에는 이것을 문서로 표명해야 하며 안전기획부 요원 한 명과 교도소 간부들로 구성되는 '전향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전향이 확정된다.

소위 반국가사범들은 이 사상전향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가 되는 데 이 분류에는 세세한 처우전반에 걸쳐서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차별대우가 뒤따르게 되

어 있다. 그밖에도 비전향자는 가석방이나 특사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도므로 무기수라면 30년이고 40년이고 한도 끝도 없이 복역해야 하고 유기수라면 하루도 예누리없이 형기를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대개 형기가 만료되어도 사회안전법에 의해 본인감호처분을 받게 되어 기약도 없이 계속 철창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70년 대의 경우와 같이 비전향 사상범들은 전향을 강요하는 무시무시한 고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수없이 많은 양심수들이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들은 대개 '서약서'(내지는 '반성문')를 쓸 것을 요구받았을 터이지만 그래도 그들 중 상당한 사람들이 '전향서'를 쓸 것을 요구받고 고민을 했다. 그래서 양심수들은 모두가 인간의 내면에까지 광적인 탄압의 손을 뻗치는 못된 일제의 잔재가 대한민국 교도소 안에 버젓이 살아 횡횡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살벌한 현대사의 시대적 제약때문에 공공연하게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단시대의 광분하는 흑백논리 아래 암묵적으로 공인된 죄의수에 대한 가혹한 인권침해가 죄의수가 아닌 많은 양심구의 숨통까지 조이게 되고 '전향서'를, '반성문'을 써야 했다. 이제 이 내심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대하여 모두 입을 열 때도 되지 않았을까?

나는 양심수에게 사상전향을 요구하는 '제도'가 우리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전향 '제도'는 비인간화의 체계이다.

나는 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 다소 당혹스럽다. 질문자는 물로 "00주의를 신봉하기 때문에" 따위의 흑백식 대답을 예상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런 질문방식은 아무리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결국은 난폭한 분단논리인 것이다. 한 인간의 세계관, 민족관, 조국관, 인간관이라는 것은 이런 분단상황에서 멋대로 빛어지고 형해화(形骸化)되어버려 그 용어의 과학적 개념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00주의'라는 몇마디 말로써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상전향 '제도'는 한 인간의 믿음이나 소망이나 느낌을 폭력적으로 흑백적으로 분류해버리는 비인간성을 그 속성으로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스스로 깊이 들여다 볼 때 한 인간이 전향을 거부하는 이유란 것이 한두 가지로 이루어진 단순한 것일 수가 없다고 믿게 된다. 나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나의 세계관과 민족관, 역사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믿음을 고수하기 위하여 사상전향을 거부했다. 즉 '71년 검거된 후 목숨이 아까워서 취조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내가 거듭했던 나약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에 대한 뼈 아픈 회한, 죽고 싶도록 참담했던 그 당시의 나의 심정으로는 내가 한 인간으로서 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이나 압력에 대한 더 이상의 인간적 폐배를 거듭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7년 형기가 끝나고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이후로는 반사회안전법 투쟁이라는 커다란 전향거부 동기가 생겨났으며 나에게 주어진 고유의 투쟁영역을, 그것이 때로는 아무리 하찮게 느껴질 지라도 차마 포기하고 떠날 수가 없었다.

나의 오기 많은 성격 등도 전향거부에 결코 무시 못할 이유로써 손꼽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나에게 전향을 요구하는 자들로부터 치사하고 야수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들이 억지로 바꾸어 놓으려는 나의 사상의 정당성을 더욱 확신할 수 밖에 없었다.'

이밖에도 인간이라는 복잡한 동물은 각 개인의 처지에 따라 크고 작은 여러가지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즉 전향거부의 이유란 한 인간의 '인격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러나 사상전향이라는 요식행위는 그 자체로서는 본질적으로 인간을 이같은 모습으로서는 대우해주지 않는다. 그것은 한 인간을 무슨 주의냐 아니나, 북이냐 남이냐로 폭력적으로 환원시켜버리는 살벌하고도 비인간적인, 그리고 인간다운 감수성을 무시하고 냉소하는 정치권력의 질문틀인 것이다. 우리는 양심수들에 던져지는 이같이 비인간적으로 경직된 질문틀을 인간존엄의 이름으로 보다 인간화될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거부해야 한다.

둘째로 전향 '제도'는 인간의 궁지를 파괴하는 체계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전향? 그까짓것 조승이 한 쪼가린데 써주면 어때서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왜 저 일제시대부터 정치권력들은 그렇게도 많은 노력을 들이면서 그렇게도 끈질기게 양심수들로부터 전향서를 받아내려고 하겠는가? 그 목적은 일차적으로 자기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반체제인사들에게 국가권력의 폭력 앞에서 인간이란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폐배주의를 심음으로써 그들을 정치적으로 폐인화시키는 데 있다. 제 아무리 '전술적으로' 전향서를 썼을 뿐이라고 떠벌려도 폭력에 굴복했다는 것을 마음 속으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은 본인이다.

나는 전향을 함으로써 결국은 정치 내지는 사회운동의 최전선으로부터 소극적인 생활로 물러서는 사람들을 목격해왔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내부에 유지해왔던 사상범으로서의 궁지, 그로 인한 정신적 긴장같은 것들이 허물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 상당수는 이런 경우에 정치적으로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 타락해 가게 되고 나아가서는 가끔 신체적으로도 폐인이 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전향강요가 한 인간을 무력화시켜 인간적인 것에의 희망이나 인간능력에 대한 믿음을 분쇄함으로써 때로 한 사람의 인간성에 대한 그 얼마나 잔인한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전향은 결코 '종이 한 조각'의 문제일 수 없다.

셋째로 사상전향 '제도'는 이간(離間)의 체계이다.

분단과 그에 따른 비민주적 지속을 바라는 정치권력은 그러한 분단과 비민주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을 크고 작은, 높고 낮은, 모든 수준에서 이간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게 마련이다. 인간사랑, 나라사랑이 지극히 인간다운 감수성은 바로 분단과 비민주에 항거하여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임각점인데 정치권력은 언제나 이와 같은 임각점에선 사람들을 철저히 고립시킴으로써 이들은 집중적인 폭력으로 산산조각내버리려는 생리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감수성이 메마르고 냉혹하고 호전적'이라고 조작된 비전향의 이미지는 분단시대에 있어서는 양심수들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더욱 위험스러운 이미지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옛날 감옥에서 알게 된 어느 기독교인 양심수는 내가 감방에서 시를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전향도 거부하는 '풀수 공산당'이 아니라. 그런데 최하림의 시를 읽다니!"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그 기관지 '민주가족'의 창간사에서 우리 서로가 관심

을 가지지 않도록, 이웃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외부압력에 의해 강요당하고 있다고 우리의 상황을 갈파하고 있다. 우리의 논리는 인간사랑과 나라사랑일 따름이다. 전향, 비전향은 우리를 이간시키는 권력의 논리이다. 우리가 진정 거부해야 할 것은 사상전향이라기보다 차라리 똑같이 인간사랑과 나라사랑에 입각하는 우리들을 전향, 비전향으로 분류, 이간시키려는 권력의 논리 그 자체인 것이다.

우리나라에 가혹한 분단상황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생겨나온 기묘한 상식들이 여러가지 있다. 그중 하나가 전향서 쓰기를 거부하는 것은 극렬 공산당이나 하는 짓이라는 상식인데, 그 결과 소위 시국사범들은 때로 아무렇지도 않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이 '전향서'(서약서)를 써버린다. 두 가지 의미에서 나는 이런 현상을 우려한다. 하나는 그런 행위가 전향서를 쓰게 하는 인권침해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되고 그것을 하나의 관행으로써 확립시켜 주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으로써 전향서 쓰기를 거부하는 양심수들의 석방은 뒤로 미루어지고 그들의 구금은 장기화된다.

"감옥에 가만히 앉아 있느니 '전향서'(서약서)라도 빨리 써서 밖에나가 활동을 해야 하지 않은가?"

그러나 정치권력이란 기본적으로 민중적 요구의 분출에 밀리어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 양심수가 '전향서'(서약서)를 썼기 때문에 석방해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나의 석방의 예를 보아도 분명하다. '선별 석방'을 비난하는 우리들은 이 전향(서약서) '제도'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선별석방'을 위한 재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 측면을 반성해 본 일이 있는 것일까? 만약에 모든 양심수가 일제히 이 전근재적인 양심탄압수단을 거부해버린다면 이 이간장치는 무력해체되어 버릴 것이다.

나는 또한 다음과 같은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70년 이후 군사정권하의 몹시 어려웠던 상황은 우리에게 실리중심, 전승중심적인 사고와 행동방식을 강요해왔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어느 의미에서는 그것은 어쩔 수 없었고 그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면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향제도'라는 관행의 기능에 대한 깊은 사색도 올바른 인식도 없이 거의 무원칙적으로 "종이 한 조가린데 좀 써 주면 어때?" 하는 식의 지극히 실리적인 사고방식이 대량으로 퍼지도록 방치된다면 그 결과 지금은 직접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어떤 해아릴 수 없이 심각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명문(明文)으로 양심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정신의 자유에 관한 포괄적 규정이며 그 구체적 발현의 종교, 학문,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원리적 지위에서는 절대적 자유권이다.

나는 이 글 앞부분에서 일제시대의 광적인 사상탄압수단을 우리가 '관행적'으로 이어받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왜 '관행적'인가? 그것은 이 사상전향과 비전향과의 분류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런 의문 제기도 없이 이런 인권유린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행해져왔다는 사실에 나는 새삼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법에도 근거가 없는 이런 양심의 자유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행위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가 극히 어려운 것으로 우리는 이를 더이상 존속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는 최근 행형당국 쪽에서 이 꼴사나운 일제 잔재인 '전향'이라는 용어를 적당한

다른 용어로 대치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를 생각할 때 나는 한편으로는 울분과도 같은 것을 금할 수가 없다.

수없이 많은 양심수들이 교도소를 드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기로는 전향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명칭의 변화는 실체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럴 듯하게 웃만 같아입은 '전향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양심수들의 양심의 자유권을 유린하는 일을 없애야 한다.

나는 사상전향문제때문에 무시무시한 동요를 겪으면서 처절한 아픔의 세월을 보낸 인간이다. 그러나 아마도 나는 전향을 했어도 역시 자괴감과 그만큼의 고통을 겪었을지도 모른다. 전향서를 쓰는 것도, 쓰지 않는 것도 견디기 힘든 아픔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더 이상 이와같은 아픔을 당해서는 안된다.

전향요구는 인간의 가장 깊은 성역에 대한 국가권력의 폭력적 침해이며 극에 달한 정치적 폭력의 표현이다.

<표 2> 1일 구속자 수치 비교표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제 7차 총회보고서” 중에서 }

'91 양심수 현황

91년은 우리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던져주었던 한 해였습니다. 반백년간의 적대관계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유엔에 가입하였고, 12월 13일에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92년 2월 8일에는 3개의 문서를 발효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급진전되었던 반면에 분단체제와 독재정권에 맞서 통일과 민주·민권의 실현을 위해 일하던 수많은 민주세력들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권유지의 수단인 국가보안법 등과 같은 악법들에 의해 끊임없이 구속되었습니다.

91년 구속 양심수 1,35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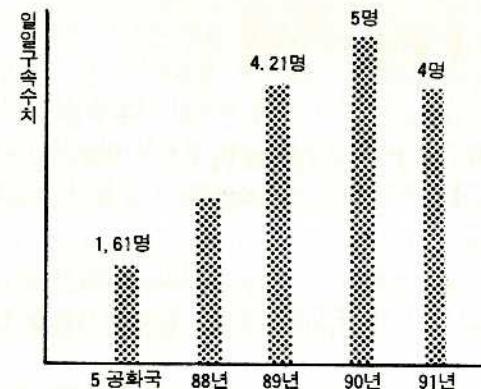
91년 한 해동안 시국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의 총수는 1,356명입니다. 이는 민가협에서 전국 100여개의 대학, 전국 13개의 지노협, 사회단체, 구속자 가족, 언론사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 조사한 수치입니다.

아래 <표 1>에서와 같이 6공화국 출범이후 구속된 양심수는 총 5,462명이나 됩니다. 인권유린의 대명사였던 5공화국 7년간의 양심수가 4,700명이었던 것에 비해, 절반 밖에 안되는 4년동안 6공화국은 하루 평균 4명 꼴의 양심수를 양산해 낸 것입니다.

<표 1> 6공화국 구속자 월별 누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계 |
|-----|-----|-----|-----|-----|-----|-----|-----|-----|-----|-----|-----|-----|------|
| 88년 | | | 38 | 125 | 80 | 159 | 34 | 122 | 41 | 78 | 79 | 23 | 779 |
| 89년 | 51 | 43 | 106 | 217 | 265 | 271 | 200 | 152 | 40 | 62 | 86 | 22 | 1515 |
| 90년 | 67 | 136 | 154 | 187 | 317 | 154 | 93 | 116 | 143 | 129 | 109 | 86 | 1812 |
| 91년 | 55 | 82 | 148 | 152 | 154 | 249 | 157 | 93 | 78 | 67 | 56 | 39 | 1356 |
| 누 계 | 173 | 261 | 446 | 681 | 816 | 833 | 484 | 483 | 302 | 336 | 330 | 170 | 5462 |

구속자의 수가 크게 늘어난 89년 3~8월, 90년 2~6월, 90년 10월은 모두 공안정국, 민자당 창당, 범죄와의 전쟁 선포 등이 있었던 시기이고 91년 3~7월은 공안통치가 노골화되던 시기이며 특히 6, 7월은 거세게 일어났던 국민적 민주화요구를 전면 탄압하던 시기였습니다. 6공화국 집권 4년동안 하루 평균 구속자 수치를 비교한 아래 <표 2>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희생되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양심수,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양심수가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의 증거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바로 91년 6, 7월의 구속자 수가 최대치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공안통치 분쇄, 민주화 요구의 절정기를 이뤘던 5, 6월 정국을 막아내기 위해 노정권은 다음과 같은 양심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는 친구의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이른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우는 상식 이하의 조작사건인 ‘유서’ 사건의 강기훈씨입니다. 더불어 17년 감옥살이를 한 서준식씨를 최초 보안관찰법을 적용해 구속했고, 범국민대책회의 이수호 집행위원장 등 대책회의 관련자 대부분을 짐시법 등의 혐의로 구속, 수배했습니다. 74세의 고령인데다 지병이 있어 수감생활이 부적당하다며 형집행정지로 석방했던 문익환 목사님을 5월정국 당시 장례위원장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재수감했습니다. 정원식 계란세례 사건으로 외국어대 학생들을 무더기로 구속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했던지 5월정국의 도화선이 됐던 강경대군의 죽음을 왜곡하는 재판장에서 이에 항의했다고 피해자인 아버지 강민조씨와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인 박정기씨를 법정소동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더구나 강민조씨는 실형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인륜마저 무시하는 정권

재판을 방청하러갔다가 법정소란을 했다고 구속된 노정순씨와 박선희씨는 아들 김상범씨와, 시동생 김기수씨와 같은 구치소에 나란히 구속 수감되었습니다.(노정순, 박선희씨는 사건의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노해, 김진주 부부, 이성수·김기나 부부, 정주용·이중섭 부부, 김진태·김진국 형제 구속등 한꺼번에 가족을 구속시키는 일은 5공하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었는데 6공 특히 91년도에는 비상식이 상식적인 일로 되어버렸습니다. 더구나 임신중에 구속된 이중섭씨는 만삭의 몸으로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했으며 분만예정일 1주일을 남겨놓고야 겨우 사회병원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6공들어 최초인 양심수에게 사형이 구형되는 일이 91년도에 있었습니다. 사노맹 사건의 박노

해씨는 사형구형에 이어 무기를 선고받았습니다.

기무사 치안본부 합동작전

국가보안법에 의한 조직 사건이 대량 발생했습니다. 안기부에 의해 구속된 사노맹 사건, 3월 조국통일촉진그룹 사건, 전대협 사건, 범민련 사건 등과 치안본부 대공분실(현 경찰청 대공3부)과 기무사가 합동 수사한 민족해방활동가 조직 사건, 청주대 자주대오 사건, 서대노예련 사건 등과 서민련 사건, 제과그룹 사건 등 끊임없는 조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안기부 수사일때는 예외없이 고문, 용공조작 시비가 있었고, 치본 기무사 합동수사는 학생운동 출신 군입대자를 군수사기관에 끌고가 사전 용공조작을 한 후 조직사건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군기무사에 의한 군·경 구속자가 급증했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6공화국 출범이후 92년 2월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군인·전경 양심수의 숫자는 총 110명)

그동안 프락치 강요등의 녹화사업, 의문사, 용공조작사건, 고문 등으로 악명을 떨쳐왔던 국군기무사는 90년 윤석양 이병에 의해 보안사 민간인 사찰이 폭로된 이후 군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이 다시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국민앞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이름만 바꾼채 보다 여전히 용공조작 활동을 벌였습니다.

대표적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91년 6월 「민족해방활동가」 조직 사건으로 서울대생 18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대에 재학중 입대한 배병창 상병이 3월 18일 기무사에 연행한 불법적인 20일간에 걸친 밀실수사를 한후 배상병과 함께 학생운동을 했던 서울대생 12명을 6월 치안본부 홍제동 분실로 연행해 용공조작한 사건입니다.

청주대 「자주대오」라는 사건도 이와 비슷한 유형입니다. 군에 입대한 송재봉씨를 기무사에 연행해 40일간의 고문 밀실수사를 벌인 끝에 학교 선후배 관계에 있던 청주대생 및 군입대자 9명을 구속시킨 사건입니다.

생존권 요구하다 구속

91년에는 구속노동자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해였는데 대우그룹 98명, 기아그룹 43명, 동영알미뉴 20여명 등의 구속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단위노조에서 정의가 발생했을시 해당노조의 노조원들을 대량 구속시켜 단위노조에서부터 철저한 와해공작을 통해 노동운동 전체를 압살하고자 했습니다.

노동자, 군인·전경 이외에도 농민, 철거민, 어민, 지역 주민들의 구속이 많아진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쌀값을 보장하라」는 벽서를 하다가 억울하게 구속된 농민 허윤하씨는 경찰 대용감방에서 점심을 짖기운 채 15일 동안 수갑에 채여 철창에 매달리는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쌀 수입개방으로 생산비는 커녕 생존권조차 박탈되어 과괴직전의 상황에 와있는 농민들, 대책없는 강제 철거에 삶의 터전을 빼앗긴 도시 서민들, 재벌들의 공해산업으로 어장을 잃어버린 어민들, 제주개발특별법에 반대하다 구속된 제주도민들, 울진 핵처리장 반대시위로 구속된 주민들 등 그야말로 최소한의 생존권 요구조차 철저하게 짓밟힌 한 해였습니다.

학문, 문화예술 탄압도구

또 다른 특징 하나는 학문, 문화예술운동 부문의 양심수가 대량 발생했습니다. 91년 6월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6명을 구속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는 등 학문의 자유 침해 시비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노래테이프를 제작했다고 음반법 위반으로 구속된 박인배씨는 1심에서 이 법의 법정 최고형인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검찰 구형 2년) 그는 당뇨병으로 위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취소, 보석이 허가되지 않았고 항소심에까지 가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영화제작소 청년의 대표 이상인씨는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란 영화를 만들었다고 영화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미술운동단체인 <서민미련>을 이적단체 혐의를 적용, 이 단체 소속 화가 14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수배했습니다.

국보법 구속자 여전히 늘어

1991년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유감없이 그 위력이 발휘된 한 해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끊임없이 국가보안법의 폐지요구가 광범위해지자 노태우 정권은 지난 91년 5월 11일 근본적인 법 폐지의 요구를 목살한 채 일부 조항만을 개정한 민자당안을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이에 대한 여론무마용 후속조치로 74명을 구속취소, 가석방했는데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의 수는 줄어들기는커녕 여전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6공 정권은 애초 법개정시에 '남용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얘기하고 '5월 법개정 이후 극소수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하고 남용된 사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5월 법개정 아전과 법개정 이후 구속자 수치는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법 개정의 명분조차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91년 5월 법개정 이전 국가보안법 구속자>

1990년 6월 국보법 구속자=398명(전체 구속자의 32%)

1990년 10월 국보법 구속자=513명(전체 구속자의 40%)

1991년 4월 국보법 구속자=539명(전체 구속자의 48%)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 국보법 구속자>

1991년 6월 국보법 구속자=537명(전체 구속자의 41%)

1991년 9월 국보법 구속자=539명(전체 구속자의 41%)

1991년 11월 국보법 구속자=482명(전체 구속자의 37%)

1992년 2월 현재 국보법 구속자=455명(전체 구속자의 47%)

6공화국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희생되었는지 아래 <표 3>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표 3> 년도별 국보법 구속자 수

| 년 도 | 88 년 | 89 년 | 90 년 | 91 년 |
|-------|-------|-----------|-----------|-----------|
| 총구속자 | 779 명 | 1515 명 | 1812 명 | 1356 명 |
| 국보법구속 | **** | 271명(18%) | 573명(32%) | 535명(40%) |

이렇게나 많은 국보법 구속현실 속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혐의가 그 아름에 걸맞지 않게 짐시법이나 화염병 법 위반 보다도 형량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서민미련 사건은 구속자 14명 중 11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민족해방 활동가 조직 사건은 민간인 구속자 12명 전원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군 수사기관에 구속된 일부는 실형 선고) 서민미련 사건이나 민족해방활동가 조직 사건에서 보여지듯 검찰이 주장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이적 활동을 한 사람들에게(?) 무더기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바로 법원으로서도 시대 변화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고집할 근거 자체가 희박해짐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적단체로 기소된 이 사건이 과잉 기소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91년도 양심수 현황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고문·밀실수사, 그리고 기본권을 유린하는 국가보안법 등의 제반 악법이 계속되는 한 “인권 선진국에 들어섰다”는 노태우 정권의 선전은 기만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000여명의 양심수를 가두어 놓고 민주와 통일을 운운하는 6공 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주사회’를 이루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제 7차 총회보고서” 중에서]

장기복역 양심수의 실태와 그 문제점

머리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남한의 정원식 총리와 북한의 연혁목 정무원 총리가 힘차게 악수하는 사진이 박하고, 그 위에 ‘남북화해의 시대를 열다’라는 어린아이 조막손만한 글자가 마치 포스터처럼 설명하게 눈에 띈다.

도대체 이런 사실과 경사들이 가슴속에 와닿질 않고 남에 나라 남의 일처럼 그저 공허롭게 한걸음 밖 주위에 서만 맴도는 이유는 대전교도소 15사를 결코 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새벽 4시. 화장실 물을 틀고 그 물을 받아 냉수마찰을 하는 소리, 거칠게 호흡하는 소리, 빗자락이 벽과 문에 가볍게 부딪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로 대전교도소 15사의 이침은 시작된다. 동양최대. 최고의 엄중시설을 자랑하는(?) 이곳에는 총각으로 23살 나이에 들어와 42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세계최장기수 김선명(64세. 무기. 42년복역)씨, 이종환(71세. 무기. 42년복역)씨, 세계최고령수 고성화(76세. 무기. 33년복역)씨등 늄막염, 폐결핵, 위장병, 심장병 등으로 고생하는 44명의 비전향장기수가 통일의 새날을 기원하면서 이 시린 겨울을 보내고 있다.

그외에 85년 학생운동고양기에 운동권과 북한이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날조극을 꾸며 운동권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운동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 만든 ‘구미유학생사건’과 ‘이근안’에 의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3번 씩이나 피를 토하며 실신을 하고서 터무니없이 ‘간첩’으로 조작된 이장령(61세 7년복역)씨, 억울하게 조작된 남북어부간첩사건 관련자등 이들 모두는 정권안보 차원에서 이데올로기 대립의 심화공작의 산물이다.

‘조작간첩’의 문제나 30·40년이라는 거의 무한의 시간 속에 처절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장기복역양심수(이하 장기수)”의 문제는 이제껏 허구적인 반공이데올로기에 묻혀 철저히 은폐되어왔으나 진정한 의미의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이제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복역양심수의 유형

현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서는 ‘장기수’를 형법 98조 ‘간첩죄’를 적용받거나 국가보안법, 반공법에 의해 7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양심수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옥중에는 90명의 ‘장기수’가 있는데 대전, 광주, 대구, 전주, 안동등 5군데 교도소에 분산 수용되어있고 특히 44명의 비전향 장기수의 경우는 모두 대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

이들을 시기별, 유형별로 분류를 하면 다음과 같이 4개의 틀로써 구분가능하다.

- 1) 해방이후에서 한국전쟁이 종결되기 전까지 좌익활동과 연관하여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부류. 이들의 주류가 ‘빨치산 활동’을 해왔기에 편의상 ‘빨치산세대’라 부른다.

이들 대부분은 해방 이전부터 일제로부터 민족의 독립을 성취하고자 싸워왔던 사람들이며 해방 이후에는 친미독재정권수립의 반대와 민중이 역사의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신했던 농민, 노동자등 기층민중이 주류를 이룬다.

이 시기의 특징은 재판의 경우 “앞줄 사형, 뒷줄 무기”식의 완전요식행위와 종형으로 일관되어 수많은 사람이 사형을 받고 처형되었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난장판이여서 ‘돈 없으면 죽고 5만환을 내면 사형수가 석방되고 3만환밖에 내지 못하면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되는 식이었고 기아·추위·물질적 결핍·내부갈등 등으로 인해 옥사하였다. 이들 중 유기형은 만기출소 무기를 받은 경우는 419직후 장면정권이 들어서면서 ‘간첩죄’를 제외한 무기수에 대해 일괄적인 20년 감형조치가 있어 60년 말에서 70년 초에 대거 석방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의 필요성과 이데올로기 탄압의 하나로 박정희 정권때인 75년 사회안전법이 제정되고 전향적 아니한 사람은 다시 재구금되었다. 결국 89년 사회안전법이 보안관찰법으로 대체됨으로써 당시 전향을 거부하고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수감되어 있던 51명 보안관찰 감호자는 모두 출소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소위 “빨치산 세대”는 모두 석방된 상태이다.

2) 종전이후부터 60년대 말까지 ‘남파공작원’이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70년대초는 국제적으로 오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데탕트 시대가 막이 오른 시기였고, 국내적으로 이를 반영하며 70년 박정희의 평화적 경쟁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제의, 72년 남북적십자회담, 72년 7·4 남북공동성명, 73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 제안등이 그 시대적 상황이었다. 그리고 북한도 대남공작을 전면수정, 더 이상 공작원을 보내지 않게 된다.

이들은 ‘간첩죄’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장면정권의 일괄 감형조치에 제외되고 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 30년, 40년째 옥살이를 계속하고 있는 ‘초장기수’들이다.

3) 70년 이후 부터 정권안보의 차원에서 이데올로기 대립을 심화시켜 반공이데올로기로 그 정권의 기반을 삼기위해 조직해낸 ‘조작간첩’이 있다.

현재는 유신정권때 들어간 조작간첩 관련자로는 7명 밖에 없고 나머지 40여명 정도는 모두가 탄생에서부터 정권의 위기가 반복되었던 5공시절에 관련된 사람이다.

이들이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황은 간첩행위를 입증할만한 뚜렷한 물적증거가 거의 없으며, 유죄판결은 전부 본인의 자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본인의 자백은 1~3개월에 이르는 불법구금하에서 취조받으면서 처참한 고문에 의한 혀위자백일을 강변하고 있다. 현재 고문에 의해 불구자가 된 사람도 확인되고 있다.

70년대 이후 기본적으로 ‘남파공작원’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첩사건이 빈번했던 이유는 국민들의 민주화요구에 맞서 북으로부터 끊임없는 전쟁가능성을 강조하여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군사독재정권의 정치적 필요 때문이라는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 할 것이다.

4) 마지막 유형은 시기적으로는 3)의 유형과 겹치지만 터무니없이 조직된 경우가 아니라 일정 변혁운동의 흐름속에서 조직적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물론 이들의 주의·주장이 반공이데올로기의 잣대로 왜곡 단순화 되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일정하게 변혁운동의 선상에서의 역할이나 그 영향등을 고려하여 또 하나의 유형을 이룬다.

대표적인 사건이 통혁당 사건, 인혁당 사건, 남민전 사건, 구미유학생사건 등이며 현재 수감중인 것은 구미유학생사건과 몇몇 개별적인 민주화운동 사건 관련자들이다.

이외에 ‘방북인사’ 부류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간첩죄의 적용을 받지않고 있고 현실적인 석방운동에서의 유리한 점을 고려하여 장기복역수의 범주로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정부측 자료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에 의해 7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공안사범으로 분류하여 이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장기수의 실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조작간첩의 문제, 장기수와 사상전향의 문제, 보안관찰법의 문제등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1) 비전향장기수의 실태

일반무기수의 경우에는 16년에서 18년이면 모두 출소를 하는 것이 관례이며 10년정도 복역하면 우량수로 승급되며 여러가지 완화된 처우를 받고 있다. 민가협에서는 20년 이상을 복역하고도 출소치 못하는 장기수를 ‘초장기수’라하며 현재 이들은 33명으로 모두 비전향수에 속하고 대부분이 ‘남파공작원’이다. 현재 비전향수는 44명이며 대전교도소에 수감돼있다.

* 표 1. 비전향장기수 연령별 분류

| 70세 이상 | 69~60세 | 59~50세 | 49세 이하 | 총 계 |
|--------|--------|--------|--------|-----|
| 8명 | 24명 | 8명 | 4명 | 44명 |

* 표 2. 비전향장기수 복역 연수별 분류

| 40년 이상 | 39~30년 | 29~20년 | 19년이하 | 총 계 |
|--------|--------|--------|-------|-----|
| 3명 | 12명 | 18명 | 11명 | 44명 |

표1)과 표2)에서 보듯이 이들의 평균연령은 이미 60세를 훨씬 넘었고 평균복역 년수는 30년에 달하며 최고 42년째 복역자도 있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장기간의 엄중 독거수용과 73~79년까지의 테러를 동반한 살인적인 전향공작에 의해 두세가지 이상의 고질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비전향장기수 중에서 34명은 소위 ‘남파공작원’이다. 이들에 대한 문제는 예민한 것이긴 하지만 아직도 오해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과연 분단의 역사속에 이들을 간단하게 “간첩”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는가? 이들은 거의가 분단이 되기전에 남쪽에서 살면서 활동을 하다가 전쟁과 더불어 월북을 했던 사람들이다. 개인적인 행·불행을 떠나 남파공작원에 대한 간첩선고가 만약 지배이데올로기에 오염된 설부론 판단이라면 그것은 통일운동의 진전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의식속의 분단과 다름없다 생각된다.

원래 ‘간첩’이라는 개념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호 적국관계가 먼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지금은 현정권 담당자조차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임을 선언했다. 굴절된 한반도의 역사속에 북한은 분명 “정부를 참칭하고 남한을 전복하려는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 희로애락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민족공동체의 나머지 반쪽이며, 또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간첩’이라는 개념도 사실상 성립되기가 힘들다.

이들을 석방하지 못한다는 정부측의 이유는 ‘전향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기 때문’이라 한다. 후술할 전향의 문제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겠지만 이들에 대한 탄압은 ‘법집행의 형평성’이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깡그리 유린하는 것이다.

2) 조작간첩의 문제

장기수중 56명정도는 조작간첩관련자이며, 그중 49명은 부폐와 무능의 상징인 5공화국에 만들어진 조작간첩 관련자들이다.

이들이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은 간첩행위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물적증거가 거의 없으며, 유죄판결은 전부 본인의 자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재판과 정에서 본인의 자백은 1~3개월에 이르는 불법구금 하에서 취조반으면서 처참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임을 강변하고 있다. 현재 고문에 의해 불구자가 된 사람도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주된 간첩사실이라는 것이 누구나 그물에 걸릴 만큼 포괄적으로 해석된 '국가기밀 탐지누설'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령 김포공항의 통관절차(김양기), 연세대학교의 시위과정(이창국), 경부고속도로가 4차선이라는 사실(신귀영) 등이다.

70년대 이후 기본적으로 '남파공작원'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첩사건이 빈번했던 이유는 국민들의 민주화요구에 맞서 북으로부터 끊임없는 전쟁가능성을 강조하여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군사독재정권의 정치적 필요 때문이라는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 할 것이다.

3) 전향의 문제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한 일반무기수라도 16년에서 18년이면 거개가 다 옥문을 나오는데 왜 비전향수는 법 집행의 형평성마저 무시된채 이들보다 두곱절 세곱절을 더살아야만 하는가? 왜 이들은 죽는 순간까지 아무런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동료들의 수발까지 차단당한채 오직 혼자만이 죽음의 고통속에 외롭게 써우다 문혀야만 하는가? 왜 이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교도소 죄악의 처우를 당해야하고 짐승처럼 취급당해야만 하는가?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바로 '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1989년에 사회안전법이 폐지되면서 전향제도의 법적 근거는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확신범으로서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는 모든 행형상의 누진처우(재소자를 범죄의 질과 범수등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에 준한 처우를 하며, 부여되어 있는 일정의 의무소각점수를 반성의 정도나 직업의 양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단계별로 처우와 석방을 유리하게하는 제도)대상에서 제외시킨다"를 그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령 제 111조 "수형자분류처우규칙 2조 1항 5조" 규정 등이 폐지되지 않음으로 해서 여전히 사상전향제도는 계속되고 있고 비전향수는 전향공작적 차원에서 온갖 불이익 처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즉 비전향수는 그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형법상의 모든 권리, 예를들면 가석방이나 감형의 혜택은 물론 의료, 소내취업, 집회등의 모든 처우에 제외되고 심지어는 생명마저 "전향"의 흉정거리로 되는 비극이 나타나기도 한다.

전향은 소극적으로는 자신이 갖고있는 생활이나 믿음을 포기·실천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그 생각이나 믿음이 잘못되었으므로 체제에 충성을 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이미 '제도'로써 존재하는 한 그것은 개인의 사상·양심 등 내면세계의 자유를 바꾸도록 국가권력이 폭력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전향"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 말이 아니라 일본인들의 조어이다. 즉 전향이라는 개념은 민주사변을 거쳐 가속적으로 군국주의의 길로 치닫던 일본제국주의가 우리의 독립운동을 포함한 반체제 사상에 대하여 탄압을 히스테릭하게 강화시키던 과정에서 점차 형성되어 1933년 '사법당국통첩'으로 최종적으로 확립된 일본제국주의의 발명품이다.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이 일제시대의 광적인 사상탄압수단을 우리나라에는 지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관행적으로 이어받아 애지중지 떠받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계가 평화와 화해의 시대로 줄달음해나가고 남한 자체가 사회주의권 나라들과 활발한 교류와 수교을 해나가는 지금 냉전시대의 사생아로써 세계사의 흐름에 부조응하고 구시대적 사고의 전형인 전향제도는 근대

국가의 법개념이나 일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유엔인권규약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4) 보안관찰법 문제

보안관찰법의 연원을 살펴보면 이것 역시 일제시대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시대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민족의 독립과 다수 인민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씨워온 독립투사, 사회운동가를 탄압하던 치안유지법(25년), 조선사상법 예방구금령(41년) 조선사상법 보호관찰령(36년)란 법들이 있은데 이법들이 현재의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보안관찰법들의 직계조상으로 그 성격과 체제 심지어 법률조항, 문구까지도 같은 것들이 있다.

지난 1975년 박정희 정권은 만기출소한 비전향 정치범들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사회안전법을 만들어 재판도 없이 단지 "재범을 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강제 연행해 전향할 때까지 교도소 구금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감호처분을 시켰다. 이 악법은 국내외의 심각한 문제제기와 87년 민주화 항쟁의 힘 덕으로 89년 초에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회안전법의 폐지로 모든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사회안전법에서 보안감호를 없애고 보안관찰과 주거제한을 정교히 다듬고 거기다가 형사별 치 조항의 발톱을 달아 만든 대체입법이 1989년 6월 16일 공포된 "보안관찰법"인 것이다. 권력당당자들의 아주 실속차린 후퇴였던 것이다.

보안처분의 판단기준인 재범을 현저한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법 어디에도 명시 되어있지 않고 있다. 단지 그 판단을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6명은 위원들로 구성되는 법무부 산하의 보안관찰 심의 위원회에서 한다.

결국 한 사회구성원에게 형벌을 가함에 있어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이미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보다 심각한 것은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 미리 이루어 질 것이라는 편견, 그것도 반공지상주의에 찌들은 흑백논리의 소유자들의 편견의 근거라는 점이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통찰력의 소유자라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보안관찰법에 의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89년 11월에 민가협의 주최로 수십년 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사회안전법 출소자 환영대회라는 행사가 준비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고령의 노인들은 그간 옥중 생활 도중 유일하게 도움을 준 민가협이라는 단체에 대한 고마움의 인사도 할겸 또 출소한 기쁨을 조금이라도 확인하고 싶은 간절한 기대를 갖고 참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일날 이른 새벽부터 대공형사들에 떠밀려 집 대문 밖에도 나올 수 없었으며 집 밖에서 또는 터미널, 역전에서 강제로 제지당하기도 하였다.

숨막꼭질과 거짓약속을 둘러대고 가까스로 참석한 5명의 출소자들은 행사가 끝나고 집을 돌아가다가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형사입건되어 불구속,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부산양로원에 기거하는 81세의 최○○(29년 복역)씨의 경우는 경찰서 지하실로 끌려가 알몸으로 취조를 받는 수모를 겪고 지금까지도 만나는 사람마다 그때의 올분을 토로하곤 한다.

고문에 의해 귀머거리가 된 안병욱(10년 복역)씨의 경우는 한국에 일가 친척도 없고 출소후 마땅히 생계유지의 방법이 없어 외국에 있는 동생에게 의지하려고 여권을 신청했는데 다음날 느닷없이 담당 대공과 지원에게 불려가 국외로 탈출을 획책했다는 억울한 윤박지름과 용의자 조서를 쓰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지난 5월 강경대 치사사건 이후에 일련의 국민항쟁에 대한 보복으로서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본형기인 7년을 다 살고 청주감호소에서 10년의 형을 더 살았다)씨가 구속되었다. 그에게 적용할 공소 내용이 없자 결국 막판에 가서 끌어다 붙인 것이 보안관찰법 중에 3개월에 한번씩 하게 되어있는 '활동신고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구속시켰고 아직까지 석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듯이 공안사범으로서 출소한 모든 정치범에게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그 것이 사소한 동료들과의 만남의 수준이라도 철저히 차단하여 그들의 존재의 근거를 박탈하려는 것이 정권당자들의 의도이고 그 대상자들로서는 보이지 않는 올타리에 다시금 같은 고통을 빼져나가게 느끼고 있다.

맺음말

현 정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과 상호교류 의지를 표명했고, 더 이상 북한은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민족 공동체로서 동반자적 관계임을 선언했다.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해 필수적이라 주장하던 남북한의 유엔가입 또한 실현되었다. 동서냉전시대의 종결과 군축 및 긴장완화의 국제질서 흐름 속에 냉전의 산물이고, 아울러 남북분단의 회생양인 국가보안법위반 장기수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루거나 덮어둘 수 없는 중요한 시안 중의 하나로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조작간첩 장기수의 문제는 정권의 혀약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는 극단적인 반공이데올로기로 인간의 모든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가정마저 파괴되는 국가권력의 심각한 인권유린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석방을 통해 명예회복이 되어야 한다. 정권 안보차원에서 5공 시절에 집중적으로 양산된 조작간첩사건의 정치적 해결은 아직도 이 사회에 뿐만 아니라 박혀있는 5공정권의 비민주적잔재를 청산하는 중요한 작업의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44명의 비전향 장기수는 혹백논리의 잣대로 구분되어지는 빨갱이가 아니라 이 분단된 조국의 통일과 통일된 새세상의 건설을 위해 나름대로 치열하게 고민해온 분들이고 분단의 뼈저리고 냉혹한 아픔을 수십년 동안 온몸으로 감내하고 계신 분들이다. 초장기수의 문제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신뢰회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해결되어져야 한다. 전향문제와 결부된 무기한의 장기구금은 법 적용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부당한 조치이며,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통일운동은 휴전협정으로 바꾸고,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비핵지대화를 실현하고 마침내 휴전선을 걷어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진행되고 확대 발전되어가는 분단의 논리를 청산하는 직업과 병행되고 분단의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분단의 산물인 '장기수'의 문제도 접근되고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다.



["인권과 정의 제192호" 중에서]

思想의 自由에 대한 재검토

울산大法學科專任講師 曹國

"사상의 자유는 우리가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Justice Holmes in U.S. v. Schiimmer, 1929)

I. 들어가는 말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료하고 한반도에서 남북한정부 사이에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남북합의서 제1조)는 합의가 이루어진 바로 이 순간에, 한국의 감옥 안에는 많은 '사상범'들이 수감되어 있다. 6공화국 출범 첫 해인 1988년에는 정부의 유화조치로 인하여 국가보안법위반자가 171명으로 약간 주춤하였으나, 89년부터는 폭증하여 89년에 460명, 90년에 518명, 91년 상반기에는 189명을 기록하고 있다.¹⁾ 이는 1989년 이래 계속된 약 10여개의 노동자, 정치조직원들에 대한 구속과 적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활동가들은 이전 시기처럼 "용공조직 철회하라"라는 수세적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렇소, 나는 사회주의자요"²⁾라는 공세적 선언을 감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언'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많은 '좌익수'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호응도 없는 상황에서 사회주의사상을 고수하고 '전향'을 거부하면서 「사회안전법」에 따라 수십년을

감옥 안에서 살다가 죽어갔던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주의자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글은 이러한 질문을 풀어나가는 작업의 일환이다. "빨갱이들은 맞쯤 봐야돼, 빨갱이니까 당해도 싸지"식의 극우적·냉전적 사고는 완전 폐기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사회주의자라고 밝히지 말고 민주주의자라고만 하지"식의 소극적 대응 또는 "사회주의자도 인간인데"식의 동정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제의 핵심은 '시민혁명'의 성과로 생취된 사상의 자유의 소중한 의미를 밝히고, 그것을 민중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 실현·발전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글은 먼저 사상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현대 서구에서 냉전시대에 벌어진 '반공캠페인'과 '반공법'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속에서 진행된 각종 판결에서 사상의 자유를 의연히옹호한 반대의견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상의 작업을 통하여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사상의 자유의 보장상태를 점검하는데 보다 분명한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사

1) 「범죄분석」, 대검찰청, 1988년 107호~1991년 120호 참조

2) 윤철호 외, 「그렇소, 나는 사회주의자요」, 일빛, 1990; 박노해, 「민들레처럼」, 노동자의 벗, 1992 참조

회주의자에 대한 낡은 입장을 불식할 수 있을 것이다.³⁾

II. 사상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1. 사상의 자유의 의의

사상의 자유는 통상 인간의 内心에 들어있는 세계관, 인생관, 정치적 신조의 자유라고 말해진다. 이러한 사상이 내심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에 표현될 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로 나타나며, 또한 신앙의 문제와 함께 문제될 때는 종교의 자유로 나타나며, 그리고 진리구명의 문제 가 될 때는 학문의 자유로 나타난다. 이렇듯 사상의 자유는 실제 모든 정신적·정치적 자유의 '원리적 기초'이며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⁴⁾ 실제 인류의 이성이 발전하고 인류사회가 새로운 발전단계로 나갈 수 있게 된 기저에는 항상 사상의 자유를 획득하려는 노력이 존재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사상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사회의 진보를 위한 수백년간의 투쟁의 성과물로서, "사상의 자유가 없는 인격적 자율성이란 애당초 생각할 수 없으며, 설사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은 희철한 무덤과 다름없을 것"이라 하겠다.⁵⁾

3) 여기서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좋고,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사상통제법」, 「역사비평」, 1988년 여름호, 역사문제연구소:「국가보안법 및 사회안전법 비판」, 「민주법학」, 창간호, 1989:「현행 국가보안법과 <민주질서보호법안> 비판」, 「제6공화국의 법지배구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개토론회 자료집, 1990:「현행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및 개정안 비판」, 「거제의 길」, 1991년 2월호(창간호), 한겨레사회연구소를 참조하라.

4) 한동섭, 「사상·양심의 자유」, 『법정』, 1961년 5월호, 8면; 清水英夫, 「思想・良心および言論の自由－資本主義社會における精神的自由」, 一粒社, 1961, 87면; 和田英夫, 「사상·양심의 자유」, 伊藤正己編(구병석 역), 「현대일본국현법론」, 법문사, 1983, 209면

5) 국순옥, 「국가보안법 폐지와 그 이후의 문제점」, 『대한변호사협회지』, 1988년 9월호, 제145호, 34면

6) J.S. 밀(이국찬 역), 「자유론」, 삼성출판사, 1982, 295~296면; *Abrahams v. United States*, 250 U. S. 616 (1919)(dissenting opinion). 이 사건은 아브라함스 등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정부의 반소정책을 비판하고 반소세력에 대한 무기수송을 막기 위해 파업할 것을 촉구하는 전단을 공장과 가두에 살포한 사건인데, 다수 의견은 '해로운 경향'(bad tendency)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홉스판사와 브랜다이스판사는 다수의견에 반대하였다.

7) 이에 대해서는 권영성, 「헌법학원론(신정판)」, 법문사, 1991, 387면; 최대권, 「헌법학」, 박영사, 1989, 211면을 참조

그러하기에 프랑스대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1조는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전달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라고 선언하였으며, 현대에 들어서도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18조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제19조는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방도를 통하여서나 국경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정보와 사상을 탐구, 입수,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하여 사상의 자유와 그 표현의 자유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966년 채택되고 1976년 발효된 '국제인권규약'의 B 규약의 제18조, 제19조도 이를 못박고 있다(또한 이러한 선언들은 밀턴(J. Milton)의 『아페오파티카』(1644)와 밀(J. S. Mill)의 『자유론』(1859)에서, 그리고 파업전단살포사건에서의 홉스(Holmes) 대법관의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론 등에서도 살펴볼 바 있다).⁶⁾

이러한 사상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헌법이론상 ① 합헌성추정배제의 원칙, ② 막연하므로 무효의 이론, ③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신적 자유의 우월론'은⁷⁾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 변혁기에 있는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는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낡은 사회와 질서를 해체하고 새사회, 새질서를 구축하려는 시기에 변혁사상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변혁사상에 대해 기존질서는 각종 탄압을 가하게 된다. 그러나 변혁사상은 자신을 임태한 낡은 사회의 모순이 해결될 때 비로소 사라지는 것이며, 탄압이 가해져 일순간은 사라지는 듯 보이더라도 그 모순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재생·부활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 예컨대 농노제가 사라질 때까지 농노제폐지의 사상은 어떠한 탄압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14세기 중반 영국의 존 볼 목사, 왓트 타일러, 16세기 초 독일의 토마스 뮌찌 등이 제창한 농민해방사상의 경우를 보라. 이들의 지도 하에 일어난 많은 농민반란 등의 참가자들에 대하여 당시 봉건국가가 화형, 낙인, 고문 등의 온갖 형벌을 가하였지만, 그러한 탄압이 농노제의 몰락을 중지시킬 수는 없었고, 농민해방사상을 제거할 수 없었다.

요컨대 변혁사상은 규제한다고 규제되는 것이 아니며, 문제의 핵심은 그 변혁사상이 등장하게 된 당해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라 하겠다.

2. 사상의 자유의 내용

이와 같은 의의를 갖는 '사상의 자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는 사상을 이유로 하는 시민을 처벌하는 법규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특정사상을 강요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둘째 국가는 특정인의 사상을 탐지하는 탐색기관을 가질 수 없다.

8) 戒能通孝, 「思想の自由－その理念と條件」, 『法律時報』, 29권 1호(1957. 1), 8면; 권영성, 같은 책, 389~392면; 김철수, 「신고 헌법학개론」(보정판), 박영사, 1990, 403~405면; 한동섭, 「사상·양심의 자유」, 『법정』, 1961년 5월호, 8면;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중), 박영사, 1989, 277면. 우리나라의 교과서들은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만, 양심과 사상이란 것 자체가 불가분의 것이므로 사상의 자유의 내용으로 인용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9) 1992년 1월경에 일어난 「한국사회주의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사건의 경우, 이 '준비위'가 사실상 결성 직후 해체되면서 아무런 활동이 없었고 지하활동에서 완전히 합법정당활동으로 전환하였음에도 구속기소되었다.

10) 이에 대해서는 木村龜二外, 「ナチスの法律」, 日本評論社, 1934; 임종국, 「일제하의 사상탄압」, 평화출판사, 1985; 김명한, 「일제의 사상통제와 그 법체계」, 서울대 석사, 1986, 참조

셋째, 국가는 사상적 이유로 사회적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넷째, 국가는 시민에게 자신의 사상에 대하여 고백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⁸⁾ 이 상의 네 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첫번째 '사상형성·결정의 자유'에서는 먼저 '사상처벌법'의 금지가 문제된다. '사상처벌법'이 존재할 경우 시민은 자신의 사상형성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 자체가 차단된다. '사상처벌법'은 특정사상을 '所持'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시민을 처벌하는데, 특정사상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발언, '금서'의 소지·독서, 특정단체에의 '가입' 등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특정사상에 동의한 사람들의 '결사'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며, 그 단체가 활동을 개시하지 않더라도 '가입' 그 자체만으로 처벌된다.⁹⁾ '사상처벌법'의 대표적인 예로는 나치스 형법상의 '국가위태죄', 일제의 '치안유지법', '사상범보호관찰령',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등이 있는데,¹⁰⁾ 이 법률들은 근대 시민형법의 기본원리마저 부정하고 인간의 内心까지를 국가가 통제하려는 사고의 발로이며, '심정형법' (心情刑法 Gesinnungsstrafrecht)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이러한 '사상처벌법' 외에도 각종 제도와 행정지침에 따라 특정사상에 대한 금지 또는 강요가 행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본다면 '공안기관'에 의한 '금서목록', '이적용공서적목록' 작성과 이에 따른 사법판단, 그리고 과거 '국민윤리' 교과목의 수강강제 등이 있으며, 또한 교과서사용이 국정교과서 또는 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5종교과서에 한정되고 있는 것도 또한 예가 될 것이다.

두번째 점은 각종 '사상경찰'의 금지인데, 일제의 '특별고등경찰'(일명 '특고'), 나치스의 '게슈타포'(Geheime Staatspolizei)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게슈타포의 경우 경찰기관 및 일반내무행정기관에 지시권을 가지고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을 통합 보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안전 기획부'와 '기무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근래 물의를 일으켰던 '보안사'의 민간인사찰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국가기구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시민들의 사상의 '불온'여부를 판단한 후 '불온시민'에 대한 온갖 불법적 방식으로 정보수집과 공작수사를 행하고 있다.¹¹⁾

세번째 점에서는 '사상범'에 대한 취직 등에서의 차별과 행정에서의 차별에 따른 '법 앞의 평등'원칙에 대한 침해가 문제된다. 노동운동관련자, 국가보안법사범에 대한 '블랙 리스트'가 정부에 의해 작성되어 각 기업체에 배포되고, 취업시마다 '신원조회'가 이루어짐으로써 취업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국자유총연맹'등의 극우반공단체에 대해서는 법률까지 제정하여 매년 20억원씩 국가적 차원의 보조가 행해지면서 말이다(88년의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한편 '전향서', '반성문' 등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구형량, 선고형량의 경증, 보안처분부과여부에서 차별이 이루어지며, 행정상의 누진처우나 가석방 등의 혜택이 박탈되는 등의 차별이 가해지고 있다.¹²⁾ 또한 '연좌제'가 사실상 존재함에 따라 사상범의 가족에까지 차별이 가해지고 있다.

네번째 점은 '思想推知의 금지'이다. 양심과 사상에 대한 추지는 중세시대의 '마녀사냥', 2차 대전 당시 '십자가밟기', 맥카시즘의 광풍 하에서 이루어졌던 '총성심사'소동 등에서 행해졌던 폭

압적 조치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좌익장기수에 대하여 1933년 일제하 「사법당국통첩」의 유산인 '전향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좌익장기수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내규' 차원에서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¹³⁾ 장기수 외의 사상범에 대해서는 '반성문', '각서' 등의 변형된 형태로 실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향서, 반성문을 쓰지 않게 되면 바로 "빨갱이니까 안 쓰는 것이다"로 단정됨으로써, '침묵의 자유'마저 봉쇄되고 인간의 내심은 강제로 추지되고 만다는 것이다.

3. 사상의 자유에 사상을 표명·실천할 자유도 포함되는가?

이상과 같은 사상의 자유의 내용은 주로 소극적인 차원에서 사상의 자유의 내용을 해명한 것이다(물론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소극적 차원의 보장도 열악한 상태이다). 그런데 이 외에 사상의 자유에는 그 사상을 공공연히 표명하고 실천하려는 자유도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게 남아 있다. 즉 사상의 자유의 적극적 측면에 대한 보장문제이다.

개인의 사상이 전혀 외부에 표명되지 아니하고 내심의 작용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사고는 극우·파쇼적 사고의 반영이므로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헌법학계의 통설은 사상을 내심에서 결정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사상을 표명·실천하는 자유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⁴⁾ 그러나 사상의 자유가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상이 외부로 표명·실천되는 경우이다. "사실상 사상실현의 자유를 빼버린 사상의 자유는 그다지 큰 의미

가 없다. 사상형성 내지 사상결정과 같은 인간의 내심의 영역은 그 본질상 어차피 국가권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마련인데, 사상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 이같은 내심영역에 국한되는 것이라면 사상의 자유를 특별히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¹⁵⁾

갈릴레오(G. Galileo)에게 '지동설'을 내심으로만 갖고 있는 자유만 인정한다는 것은 갈릴레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사상을 남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사상가 자신이 '불만, 차라리 고통스러운 일이며, 분명히 그의 동포들에게 무가치한 일'이니 말이다."¹⁶⁾ 그리고 한 시민이 "나는 사회주의자요, 나는 사회주의사회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소"라고 자신의 사상을 표명하고, 그 사상에 대하여 글을 써서 기고·출판하고 또한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끼리 조직을 결성하고 시위도 행하였다고 하자. 이러한 행위는 사상의 자유보장의 범위밖에 있는 것일까? 이 시민이 '붉은 여단'(Brigade Rosse), '적군파'(RAF)식의 테러행위를 개시하지 않는 이상, 위의 행위는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이 문제는 사상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사이의 접점에 있는 사안인 바, 임박한 불법행동과 "실질적 해악(substantial evil)을 야기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¹⁷⁾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러한 사상표명·실천은 자유이며,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있다면 그것은 위헌적 법률일 것이다(이 글의 제3절에서 상술하겠지만, 1957년 미국최고재판소는 '에이츠 대 합중국'사건에서 폭력의 이론적 옹호는 직접 행동과 다르므로 유죄가 될 수 없으며, 공산당가입 자체만으로 처벌될 수 없다고 판

15) 허영, 같은 책, 231면. 원문은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인용자가 '양심' 대신에 '사상'을 넣어 인용하였다.

16) J. B. 베리(양병우 역), 「사상의 자유의 역사」, 박영사, 1986, 7면.

17) Schenck v. United States, 249 U.S. 47(1919), 이 원칙의 형성, 퇴행, 재형성의 경과에 대해서는 양건,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기본원리—미국판례법상의 사전제한금지의 원칙 및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4집(1987.2), 한양대 법학연구소를 참조하라.

18) Yates v. United States, 354 U.S. 298(1957)

시한 바 있다).¹⁸⁾

III. 냉전시기 서구에서의 '사상의 자유'의 침해와 '사상통제법'의 문제

현재 서구의 경우에 공산당, 사회당 등의 각종 좌익정당이 합법화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유럽에서 사회주의운동의 오랜 전통과 반파시즘투쟁에서 좌익이 보인 혼신성과 철저성으로, 좌익의 존재와 활동은 이미 국민의 생활 속에서 그 의미를 인정받고 있는지 오래이다(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공산당의 경우는 25% 내외의 고정적 지지를 기초로 계속 '제1야당'의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냉전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좌익 자체를 불법화하고 탄압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서구국가' 중에서도 냉전의 한 축인 미국과 패전국으로서 미국의 점령하에 있었던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달랐다. 이 세 나라에서는 '반공주의'가 특히 기승을 부렸고, 이 속에서 일정 기간 동안 좌익 자체에 대한 탄압이라는 사태가 일어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 세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사상의 자유' 문제의 경우 이 세 나라에서 특정 기간 동안에 일어난 '반공캠페인'식의 논리만이 수입되어 활용되고 있고, 그 '예외적' 기간 후의 세 나라의 상태와 여타 서구자유민주주의국가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려 하지 않아왔다.

이하에서는 서구 중에서도 특히 냉전의 조류가 밀어닥쳤던 위 세 나라를 중심으로 사상의 자유의 침해와 그 극복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민주주의관', '좌익관'의 뿌리

11) 현재 서독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인 '연방현법수호청'(BfV)은 게슈타포의 교훈에 따라 정보활동만 수행하여 수사권은 갖고 있지 않다(김원치 편저, 「신좌파와 헤리리즘」, 창지사, 1989, 199면).

12) '수형자분류처우규칙'(1969. 5. 16. 법무부령 제11호) 제2조 1항 5호

13) 법무부 예규 제5호(1964. 1. 11. 좌익수형자의 사상전향심사방안추가지시)와 법무부 예규 제281호(1983.

12. 5. 좌익수형자 등 사상전향공작업무처리요강 활용)

14) 권영성, 같은 책, 393면; 김철수, 같은 책, 407~408면

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사상'의 문제에서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타를 잡아보고자 한다.

1. 미국-'맥카시즘'의 광풍과 각종 '반공법'의 발효

제2차 세계대전에의 참전을 둘러싸고, '참전'과 '반전'파가 논쟁을 벌이던 도중이던 1940년 6월, 미국 정부는 "파괴활동방지법"(Act to Prohibit Certain Subversive Activities)를 제정하였다(동법은 제안자 스미스(H.W. Smith)의 이름을 따서 통상 '스미스법'이라고 칭한다).¹⁹⁾ 1940년은 미국이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이었는데, 미국의 독점자본주의는 그 '도대'의 본성상 파시즈다오 오히려 내부의 공산주의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이에 대한 방책을 세우려 한 것이다. '스미스법'은 군대내의 불복종 등을 唱導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외에, 소위 '반란방지조항'이라고 불리우는 제2조에, ① 합중국의 주·연방정부를 폭력으로 전복 또는 파괴하는 것이 의무이고 필요하고 희망한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타당하다고 주장·교시하는 행위, ② 위의 이론을 교시·주장·장려하는 자들의 협회·단체·집회를 조직하는 것을 듣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공산당 정부전복음모사건'(=일명 '데니스 사건')에 대한 미국최고재판소의 판결(1951. 6. 4.)은 '스미스법' 제2조를 적용한 것이었다.²⁰⁾ 데니스(E. Dennis) 등 12명은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공산당을 조직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다. 이에 대법원에서의 다수의견은 당시까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원칙으로

19) 동법의 전신으로는 1798년의 「선동법」, 1918년의 「간첩법」(Espionage Act)등이 있으며, '스미스법'은 1940년에 통과된 「외국인등록법」(The Alien Registration Act, 1940)의 일부로 공산당의 탄압을 목적으로 입법된 것이었다.

20) Dennis v. United States, 341 U. S 494(1951). 이 판결에 대한 논평으로는 森林金壽, 「最近の米國自由人權問題」, 「法律時報」23권 1호; 平野義太郎, 「基本的人權と治安立法」, 「法律時報」, 24권 1호(1952. 1월)을 참조하라.

21) 타글리스판사의 사상에 대해서는 안경환, 「미국법의 이론적 조명-윌리암 타글리스판사의 법사상」, 고시계, 1986을 참조하라.

확립되어 오던 흄즈 판사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clear and present danger)을 변질시켜 버린다. 다수의견은 "폭력에 의한 정부 전복의 시도의 그것이 비록 혁명가의 숫자나 힘에 비추어 해당초부터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의회가 이를 규제하기에 충분한 해악이다"(강조는 인용자)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블랙판사는 다음과 같이 '스미스법'은 위헌이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기소사실은 그들이 다가오는 장래에 정부의 폭력적 전복을 교육·창도하기 위하여 공산당을 조직하고, 언론 또는 신문, 출판물을 이용할 것을 공동 모의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둘려 말해 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헌법수정 제1조가 금지하고 있다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바의, 언론과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이라는 해악적 형태이다. 나는 이 사전검열을 허용하고 있는 스미스법의 제3절은 그 자체로도 또한 그 적용에서도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싶다. 내가 항상 확신하고 있는 것은, 수정 제1조는 우리 정부의 기초이고, 그것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파괴에 대한 최고의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이다"(강조는 인용자). 이어서 그는 "보다 냉정한 시대가 와서 현재와 같은 압박, 격정, 공포가 잠잠해지는 그날에는, 현재의 재판소 또는 이후 시대의 재판소가 헌법수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를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그것이 당연하게 우대받는 지위로 재차 올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여, 반공이 판을 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혼들리지 않고 '헌법상의 자유'를 지키려는 의연한 법률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더글라스판사도 반대의견을 제시한다.²¹⁾

타글리스판사의 사상에 대해서는 안경환, 「미국법의 이론적 조명-윌리암 타글리스판사의 법사상」, 고시계, 1986을 참조하라.

그는 상고인들이 대통령의 암살, 폭탄설치의 기술, 시가전의 방법 등을 교육하였다면 모르되, 상고인들은 실제 정부전복을 모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전복을 교육·창도하는 사람들의 당, 단체, 집회를 조직하는 것을 공모하고, 또한 정부전복을 교육·창도하는 것을 공모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되었으므로 사정은 다르다고 의견을 제시한다. 이러한 경우는 목표의 해악이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하다는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따라서 이런 정도의 행위는 수정 제1조의 범위 내에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상고인들이 매클레인의 저작들을 교육한 것에 대하여, "이러한 저작들이 합법적으로 도서관의 서가에 끊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이를 교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범죄로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고 있었다.²²⁾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 사회에서는 소련의 소위 '팽창주의'에 대한 위협을 막는다는 명분 하에 반공주의와 배외주의적 분위기가 팽배하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47년에 로버트 태프트(R. Taft)주도로 '노사관계법'(일명 '태프트 하트리법', Taft-Hartley Act)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막고 '클로즈드 스토어'(closed shop)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특히 '사상의 자유' 중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노조간부는 "공

22) 또한 그는 이 반대의견에서 "우리 정치제도의 광영(光榮)인 언론의 자유는 창도된 해악이 절박한 것이라는 위험성에 대하여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명이 없는 한 회생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23) '태프트 하트리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합헌론을 편 American Communications Association(CIO) v. Douglas 339 U.S. 382(1950)과 위헌론을 편 United States v. Brown 381 U.S. 437(1965)을 참조하라.

24) 러시아혁명에 대한 반동에서 미국에서는 1920년 1월에 법무장관 파머(Mitchell A. Palmer)는 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3천명의 외국인을 체포하여, 그 중 556명의 급진주의자를 국외 추방하였다. 또한 17개주에서 '범죄노조단속법'(Criminal Syndicalist Laws)이 제정되어 많은 급진주의자들이 체포되었고, 뉴욕주 의회는 뉴욕시에서 당선된 사회당후보들의 의원직 취임을 거부하였다. 이 '빨갱이소동'의 결정은 무정부주의자 사코(N. Sacco)와 반제티(B. Vanzetti)에 대한 살인혐의를 이유로 한 체포와 사형집행이었다(이주영, 「미국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8, 252면).

25) 맥카시즘에 대해서는 노명식,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그 비판적 연구」, 민음사, 1991, 246~250; Robert Griffith, The Politics of Fear: Joseph R. McCarthy and the Senate, 2nd edn., Amherst, Mass., Univ. of Massachusetts Press, 1987, pp. 321~335을 참조하라.

26) 맥카시가 당선되자 마자 취한 행동은 1944년 발지(Bulge)전투 때 말메디(Malmédy)의 군대학살을 저지른 나치스전범들을 처형하려는 노력에 강력하게 항의한 일이었는데, 이는 그의 성향을 잘 보여준다(보이어·모레이스(박순식 역), 「미국노동운동비사」, 인간사, 1981, 387면).

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선서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충성선서조항이 들어가 있었다.²³⁾

이러한 반공주의는 중국혁명의 승리와 한국전쟁의 발발로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1949년부터 54년까지 미국에서는 1차 세계대전 후에 나타났던 '빨갱이소동'(Red Scare)²⁴⁾과 같은 '대공포'(the Great Fear)가 일어났다. '대공포'의 결정은 유명한 '맥카시즘'(McCarthyism)이라는 현대판 '마녀사냥'이다.²⁵⁾ 이와 함께 법적으로는 「국내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 1950: 일명 '맥카런법'(The McCarran Act), 1953. 3. 23. 발효), 「공산주의자통제법」(Communist Control Act of 1954) 등 각종 '반공법', '사상통제법'이 제정된다.

먼저 1947년 3월 22일 트루먼은 정부 내로에의 '불충분자들의 침투'를 색출하는 계획을 실시하라는 행정명령 제9835호를 발포하였다. 그리고 '충성심사위원회'(Loyalty Review Board)가 설치되어 수백만명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또한 당시 상원의원 맥카시는 1950년 2월 미국무성에 57명 이상의 공산주의자가 있으며('솔트레이크시티 연설'), 그 책임은 국무장관 애치슨(D. Acheson)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나아가서는 군장성, 민주당원, 공화당원까지 무차별적으로 비난하였다.²⁶⁾ 그 결과 1956년까지 안보충성조사로 인하여 연방공무원 2천 7백명이 파면,

1만 2천명이 해임되었고, 6백여명의 교수, 교사가 해직되었으며, 이 모든 조치는 비밀증거와 유급밀고자들에 의해 판사나 배심원없이 집행되었다. 그리고 250여명의 감독, 작가, 배우가 헐리우드의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공산당 외에도 소평문화센터, 흑인예술가위원회, 인권보호위원회, 미국작가동맹, 워싱턴서점협회 등이 '불충단체'의 리스트에 오르게 되었다. 또한 40개의 노동조합이 공산주의자의 가입을 금지하게 되었으며, 좌익의 낙인이 찍힌 몇 개의 노조는 해체되었다.²⁷⁾

당시 매카시즘의 동조자이었던 작가 시드니 후크(Sidney Hook)은 미국헌법수정조항 제5조의 묵비권에 의해 신문에 답하지 않는 자는 실질적으로 공산주의자임에 틀림없고, 그 묵비권에 호소하는 자는 거의 전부 현재 공산당원이거나 과거에 공산당원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²⁸⁾ 형사소송법의 기초조차 완전히 무너뜨리는 발언이 주창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매카시는 국무성의 해외도서관에 공산주의자의 책들이 소장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국무성은 세계의 미국도서관센터에 도서제거명령을 내렸는데, 그 중에는 「토마스 제퍼슨선집」도 들어 있었다.²⁹⁾ 요컨대 매카시즘은 자유민주주의의 최소한마저도 깡그리 부정하고 있었으며, "보수적 아메리카니즘의 일원론적, 단세포적 충동"³⁰⁾의 발로였던 것이다.

이러한 '매카시즘' 광풍 하에서 이루어진 충성안보프로그램에 대하여 더글라스판사는 통렬한

비판을 하였다. "대질할 수도 없는 익명의 제보자의 신빙성없는 제보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풍조는 우리 사회에서 하루 빨리 근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얼굴없는 사람들의 귀속으로 옮아다니는 낭설을 '증언'이라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반대신문조차도 불허하는 푸닥거리는 결코 '청문회'일 수 없다. 인간의 생명이 걸려 있는 이러한 푸닥거리를 하루 빨리 우리 사회에서 물아내어야 한다."³¹⁾

이상과 같은 반공일변도의 분위기는 '맥카런법'이라는 노골적인 '반공법', '사상통제법'으로 선명하게 법제화된다. 동법은 법안('먼트 닉슨(Munt Nixon)법안') 당시부터 하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폐기되기까지 하였으나,³²⁾ 한국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상원과 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의회를 통과하였다. 동법안이 통과되어 대통령에게 회승되자 트루만 대통령은 법안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 때문에 거부교서를 내렸는데 (1950. 9. 22.),³³⁾ 거부교서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이 법안을 재의에 부쳐 재가결하였고, 이에 따라 '맥카런법'은 1953년 3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맥카런법'의 특징은 각종의 소위 '공산주의단체'에 대한 탄압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트루만 대통령도 거부교서를 내릴 만큼 온갖 불명료한 개념과 제반 기본권침해조치를 남발하고 있었다. 동법은 '파괴활동단속법'(Subversive Activities Control Act of 1950)으로 불리는

27) D. Caute *The Great Fear*, Secker & Warburg, 1978, pp. 275, 353, 359, 364, 406; 노명식, 위의 책, 248면; 하워드 진(조선해 역), 「미국민중저항사」 II, 일월서각, 1986, 168~169면, 173면

28) D. Caute, *The Fellow Travellers*, Weidenfeld & Nicolson, 1973, p.311

29) 하워드 진, 같은 책, 171면

30) Lipset, Seymour Martin., and Earl Raab, *The Politics of Unreason: Right-Wing Extremism in America, 1790~1977*, 2nd edn., Univ. of Chicago Press, 1978, p.224(rnjsdydfla, 「미국-보수적 정치문화의 사상과 역사」, 역사비평사, 1991, 165면에서 재인용)

31) *United States v. Nugent*, 346 U.S 1(1953)

32) 의회에서의 비판에 대해서는 平野義太郎, 같은 글, 7~8면을 참조하라.

33) 트루만의 거부교서는 "요컨대 동법안의 전조항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그 대부분은 공산주의로부터 진정한 현실적인 위협에 대하여 향해져 있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공산주의의 대한 타격을 주는 대신에 이 법안은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입장 자체에 타격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었다

(平野義太郎, 같은 글, 8면)

제1장과 '긴급구속법'(Emergency Detention Act of 1950)이라 불리는 제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⁴⁾

그 중요한 내용을 보자면, 제2조는 국내 공산주의운동의 존재는 "미국의 안전과 자유로운 미국의 제도들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만든다"라고 규정하여 '스미스법'처럼 위헌론이 제기될 것을 애초에 입법적으로 봉쇄하려 하였다. 제7조는 공산주의단체의 사무소소재지, 직원 및 단원의 성명, 주소, 금전출납상황을 검찰총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동시에 매년 년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8조는 공산주의 행동단체단원의 개별적 등록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공산주의단체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9조는 등록부를 사법성 내에 보관할 것과 일반공중에게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존·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은 간접적으로 취업제한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다음으로 공산주의단체에 대한 불이익한 차별취급을 명문화한 규정을 보면, 먼저 공산주의단체단원의 고용제한으로서 등록된 공산주의단체·위원회의등록명령이 확정한 단체의 단원이 미국의 공직·국방시설에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단체에 대하여 미국 혹은 국방시설의 관리고용인이 자금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상기 단체원의 규정위반행위를 조언·권고·장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제6조는 공산주의단체단원에 대한 여권발행·갱신·사용·사용기도 등을 거부하고 있고, 제10조는 우편 및 州間·외국교역수단의 이용에 대한 제한을, 제11조는 감면세의 거부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의 결정적 문제점은 이러한 광범한 통제, 차별, 불이익을 받는 '공산주의단체'(Communist organization)로 '공산주의행동단체'(Com-

34) USC Title 50(War and Defence), Chapter 23. 국역본은 대검찰청, 「각국의 공안관계법률」(공안자료집 제6권), 대검찰청공안부, 1989에 수록.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내 자유주의자의 비판은 内山敏, 「アメリカ破防法と良識の聲」, 「法律時報」, 26권 4호, (1954년 4월)을 참조하라.

35) *Yates v. United States*, 354 U.S 298(1957)

unistaction organization), '공산주의외곽단체'(Communist-front organization), '공산주의자침투단체' 등을 열거하고 있는 바, 공산당은 물론 공산당원이 관련하고 있는 모든 단체, 국내 외의 공산주의자가 지지·참여하고 있는 모든 운동, 예를 들면 반전평화운동에 참가하는 개인과 단체가 크레믈린의 앞잡이로 파악하여, 통제와 불이익을 가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다. 요컨대 동법은 '공산주의의 위협'의 명분하에서 사상을 탄압하고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전형적인 법률이라 하겠다(이러한 '맥카런법' 외에 '공산주의자동제법'이 있는데, 동법은 공산당의 불법화를 선언하고 있으며, 공산당 또는 이러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당원으로 머물러 있는 자는 '맥카런법'이 정한 '공산주의행동단체'의 구성원에게 적용하는 모든 규정과 처벌을 적용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태프트 하트리법'(1947)의 반공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냉전'하에서 일어났던 '맥카시즘'의 광풍과 노골적인 '사상통제법'의 발호는 냉전이 완화되어 가자 스러지기 시작하였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1957년 미국 최고재판소는 '예이츠 대 합중국'사건(*Yates v. U.S.*)판결을 통하여 공산주의자에 대한 탄압을 완화시켰다.³⁵⁾ 이 사건에서도 '스미스법' 위반이 문제되었는데, 이 판결은 1951년의 데니스판결을 크게 수정한다. 1951년 데니스판결은 공산주의자들이 정부를 전복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그것이 애당초 실현가능성이 없더라 하더라도 음모라는 사실만으로도 유죄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1957년 예이츠판결은 스미스법의 규정은 "행동과 구별되는 원리(principles)의 주장"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상고인들은 철학을 주장하였을 뿐 행동을 선동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무죄를 판시하였다. 요컨대 폭력의 이론적 응호는 직접 행

동과 다르므로 유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공산당가입 자체만으로는 처벌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이후 위에서 본 각종 '반공법'들도 사문화되어 버리고 말았으며, 미국공산당은 합법화되었던 것이다(물론 이 법률들은 미국에서 다시 '파쇼화'경향이 일어난다면 유용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2. 서독-법체제의 나치화와 독일공산당 금지 판결(1956)

히틀러의 '제3제국'이 붕괴하고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시기인 1947년 말과 1948년 초까지에는 서방점령지구의 란트연립정부에는 항상 공산주의자가 연립에 참여할 수 있었다. 독일공산당(KPD)이 가장 강력하게 반나치스투쟁을 벌였다는 엄연한 사실은 이 참여에 대해 어떠한 반대도 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KPD는 1932년 6월 11일의 연방의회총선거에서 총유효투표의 16.9%에 해당하는 5,980,239표를 획득하여, 100개의 의석을 차지한 바 있고, 1949년 8월 14일의 연방의회의 원총선거에서는 유효투표 5.7%에 해당하는 1,361,706표를 얻어 15개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데나워 기독교민주동맹(CD)정부가 출범하고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아데나워정부는 스탈린이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독에 대한 침략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산당 및 여타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을 개시한다. 또한 당시 아데나워정부는 서독의 재군비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당시 KPD는 1945년 경부터 재군비반대, 소련 등 동구제국과의 평화조약체결, 독일의 재통일 등을 주장하며 아데나워정부의 정책에 정면 반대를 표방하고 있었다. 이러한 KPD는

아데나워정부에게는 눈에 가시였고, 연방정부는 1951년 11월 22일 연방헌법재판소에 KPD가 위헌정당임을 확인해주도록 제소하게 된다.³⁶⁾

한편 이러한 냉전적 경향이 강화되는 가운데 법체제의 '나치화'가 진행된다. 1951년 형법개정은 이를 잘 보여주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국가를 위험에 빼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의 소지 자체를 처벌한다는 형법 제93조 1항 2호는 나치스형법 제85조(1934. 4. 24.)를 계승한 것이었고, 둘째 '국가기밀'은 "다른 정부에 대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안녕에 필요한 기밀"이라고 한 형법 99조 이하와 같이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여 자의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나치스 형법 제88조를 계승한 것이었다. 세째 '국가위태죄'(Staatsgefährdung)라는 사상경찰법적인 규정도 나치스형법을 계승한 것이었다. 넷째 "연방공화국 또는 헌법적 질서를 집회·문서·회화로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96조는 아데나워수상과 그 정부에 대한 사상적 비판도 '헌법적 질서'에 대한 비방으로 처벌하고 전쟁정책에 대한 언론상의 비판도 처벌하는 조문이었다. 이러한 개정형법에 따라 아데나워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연설, 문서도 처벌되고, 동서독간의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내란기독, 국가위태죄에 문의되는 상황이었다.³⁷⁾

또한 당시 아데나워정부는 반공의 명목 하에 아데나워정부의 800명의 사법관을 복직시켰다(예를 들어 메르멘스 변호사, 공산당, 평화위원회간부를 소추한 최고재판소 제3부(정치형법부)의 부장 에른스트 칸터는 나치스 시대 최고군사재판소의 판사였고 나치스 국방군의 사법부장이었다). 이러한 복직에 대하여 당시 유럽법조인들의 항의가 잇따랐

36) 이상은 권영성, 「정당의 해산」『고시연구』, 1981년 12월, 1982년 1월호; 김민배,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전투적 민주주의'의 논리와 그 비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민주법학』 4호, 푸른산, 1990, 22, 31면 참조

37) 平野義太郎, 「西獨における法體制のナチ化と民主的権利」, 『法律時報』, 1960년 5호(통권 363호), 71면. 당시 유명한 듀셀도르프재판(1958. 5. 20.)은 "아데나워수상 및 정부에 대한 계획적인 비방"을 이유로 「연방공화국평화위원회」간부 메르멘스변호사를 징역 3년 6개월에 처하였다(平野義太郎, 같은 글, 70-71면).

는데, 프랑스의 상 푸리에 목사 겸 교수는 "아데나워서독정부는 구나치스시대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또한 많은 무고한 시민을 교수했던 검사·재판관을 다시 사법의 중직에 임용하고 있다. 그들은 현재 독일의 사법을 이 나치의 보복주의로 되돌려 놓으려고 있다. 그들이 사법관의 법복을 입은 채로 級首者の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규탄한 바 있다.³⁸⁾

이러한 흐름 속에 「민주권리옹호동맹」이 해산되고, 이어 1956년에는 KPD를 금지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등 각종 400여개의 민주단체가 해산되었다. 이때 「민주법률가협회」서독지부도 해산되었으며, 많은 교수가 해직되고 변호사들은 직을 박탈당하였다. 특히 KPD금지판결은 1933년 2월 28일의 「공산당금지법」(Sozialistengesetz)과 '대통령긴급령령'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우리 법학계에서 이 판결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공산당을 배제하는 것이며, 여기서의 민주주의란 소위 '방어적 민주주의'(abwehrbereite Demokratie) 또는 '전투적 민주주의'(streitbare Demokratie)라는 주장의 한 논거로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 판례가 취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론의 문제점은 헌법학의 문제로 넘기기로 하고,³⁹⁾ 여기서는 이 판결에서 나타나는 '심정형법'적, '사상처벌법'적 경향,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KPD위헌판결은 서독기본법 제2조 2항이 정당해산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폐지 할 목적 또는 행동"에서의 '목적'은 정당금지조항이 '예방적 헌법보장조항'이므로 형법 제81조

38) 平野義太郎, 같은 글, 72면; *Law and Legislation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Sept. 1959.

39) 여기서는 '민주주의'의 의미가 '반파쇼민주주의'에서 '반공민주주의'로 변화하였다는 점만 지적해두고자 한다. 상세한 것은 김민배(1990)을 참조하라.

40) 1956. 8. 17. Urteil BVerf GE 5. 85 1BvB2 / 51.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권영성, 「정당의 해산」『고시연구』, 1981년 12월, 1982년 1월호와 西村信雄, 「西ドイツにおける共産黨禁止の判決」, 『法律時報』 28권 11호(1956.11.)을 참조하라.

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폐지하려는 목적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에 ‘동조’(?)하였을 것이다. 게다가 나치스붕괴 이후 수년간 합법화되어 의석까지 갖고 있던 정당—이 점에서 미국공산당과도 또 다르다.—을 불법화하는데는 보다 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KPD에 대한 독일 국민 스스로에 의한 판단의 기회없이 지배체제는 ‘냉전’을 기회로 하여 해산결정을 밀어부쳤던 것이다. 그리고 냉전의 최전선에 처해있던 서독 상황에서 흠크식의 반대의견이 나타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할 것이다.

‘냉전’이 끝나고 ‘평화공존’의 시대가 오고 서독에서 기민당(CDU)과 사민당(SPD)간의 ‘대연립내각’(große Koalition)이 성립된 후 1968년에 독일공산당(DKP)은 KPD의 전통을 계승하며 재조직되었고, 80년 초반까지 DKP는 선거에 참여하여 약 0.2~0.3%의 지지를 얻고 있다.⁴¹⁾ 이에 대해 “KPD를 위한 대체조직을 결성하거나 협존조직들을 대체조직으로서 존속시키는 것은 금지된다”라는 1951년 당시의 판결주문을 들어 다시 해산을 제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이는 서독 좌파가 대중과 결합하지 못한 채 자리멸렬해서 탄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현재 통독에서는 과거 동독(GDR)의 집권당인 독일통일사회당(SED)의 후신인 민주사회당(PDS)은 새로운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지난 선거에서 16%의 지지를 얻어 강력한 야당으로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요컨대 현재 독일에서는 테러리즘 조직 이외의 제반 좌익정당들은 합법화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다(그러나 최근 통독에서 보이고 있는 ‘스킨 헤드족’의 테러, 극우정당의 드세 등 ‘신나치화’경향이 심화된다면 DKP와 PDS에 대한 위헌제소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41) 김원치 편저(1989), 40,249면

42) 増島宏, 「現代日本の政黨と政治」, 大月書店, 1966, 341면의 도표 및 피터 버튼, 「전후 일본공산당의 변천사」, 현대일본연구회 편, 「현대일본의 혁신세력」, 법문사, 1990, 273~274면 참조.

3. 일본-‘좌의 추방’(Red Purge)과 「파괴활동 금지법」(1952)

미군정은 점령 초기에는 일본의 ‘민주화’를 위하여 ‘치안유지법’폐지, ‘재벌’해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일본공산당도 합법화하였다. 그리고 일본공산당은 1946년 4월 10일 사상 최초의 보통 선거로 치뤄진 중의원선거에서 5석을 확보하였고(총투표수의 3.8%), 47년 4월 선거에는 4석을 (총투표수의 3.7%), 49년 1월 선거에서는 35석을 획득하고 있었다(총투표수의 10%). 또한 일본사회당은 1947년 4월의 신헌법에 의한 최초의 선거에서 제1당이 되어(143석) 서기장 가다야마 대쓰(片山哲)가 수상으로 지명되는 등 집권까지 경험하였다(그러나 이후 정국의 급변 속에 사회당 정권은 단명하고 만다).⁴²⁾ 이렇듯 점령 초기에는 일체의 좌파정당이 완전하게 합법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냉전이 전개되자 점령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그 계기가 된 것은 노사카 산조(野坂參三)가 주도하던 일본공산당의 ‘사랑받는 공산당’노선에 대한 코민포름의 맹비판과 그에 따른 일본공산당의 강경투쟁노선으로의 전회였다. 미군정은 1950년 5월 3일 헌법기념일에 성명을 발표하여 일본공산당을 침략의 앞잡이이며, 파괴적 단체라고 맹비난하였고, 6월 6일에는 소위 ‘맥아더서한’을 발하여 공산당중앙위원 24명의 공식추방을, 7월 18일에는 당기관지『하카하다』(赤旗)의 정간 및 그 後繼紙발행금지 등을 각각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일본정부에 명령하였다. 또한 7월 24일에 미군정은 신문협회대표에게 공산당원이나 그 동조자의 추방을 권고하는 한편, 28일부터는 동경의 신문사, 통신사, 방송 협회 등의 언론기관과 모든 산업에 해고대상자를 통보하였다. 일본의 정부가 이에 호통하였음은 물론이었고, 그 결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

이 “자유의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라는 명분하에 신문, 방송, 전산, 통신기업에서부터 일반기업에까지 모든 산업에 걸쳐 15만 2천명에 달하는 공산당원과 그 동조자들이 직장에서 내쫓기게 된다. 이것이 유명한 ‘좌의 추방’(Red Purge)이다.⁴³⁾ 요컨대 미국은 일본을 ‘극동의 공장, 반공장벽’으로 부흥하기 위하여 ‘중도정권’을 단념하고 ‘보수정권’을 선택함에 따라 이를 위한 ‘정지작업’을 강행했던 것이다.

이러한 초법적 ‘좌의추방’은 당시 일본 근로기준법 제3조와 헌법 제1조의 평등원칙, 그리고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였고,⁴³⁾ 나아가 이 캠페인이 공산주의자 및 그 동조자를 기업으로부터 배제하여 공산주의사상의 영향력을 절멸시키려는 것이었으므로 바로 사상의 자유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실제 당시 일본 최고재판소는 “맥아더서한에 의할 때에는 공산주의자 또는 그 동조자인 것 자체에 의하여 해고될 수 있는 것이며, 즉 어떠한 사상의 소지라는 그 자체에 의하여 차별되는 것이며, 그 이상의 외부적인 이유, 예컨대 위법한 행위를 일체 필요로 하지 않는다”(강조는 인용자)라고 하고 있었다.⁴⁵⁾ 사상탄압을 노골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이 ‘좌의추방’에 대한 최초의 판결은 朝日신문사 서부본사 사건에 관한 1950년 9월 9일의 福岡지방재판소 小倉지부의 판결이다. 이 판결은 ‘사상의 자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물론 사람이 어떠한 사상을 가지는가도 사상 그 자체는 절대적으로 자유이고, 또한 사람이 순수하게 사상을 나타내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즉 순수하게 진리탐구를 위해 언론·저작·출판에 의해 사상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이는 절대적으로 자유인 바, 그 한에서는 공공의 복지

43) 한태호, 「현대일본정치문화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159~160, 232면; 황성주·한봉호 공편, 「일본, 일본인론—일본열도심층분석」, 교육연구사, 1984, 414~418면; 이상준 편역, 「일본보수혁신대립투쟁사」, 민백, 1990, 75~76면

44) 일본근로기준법 제3조는 “사용자는 노동자의 국적, 신조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노동조건에 관하여 차별적 취급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5) 最判, 昭 27. 4. 8. 勞動法律旬報, 113號

46) 福岡地裁小倉支部判決, 昭 25. 9. 9. 裁時 66

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결사하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공의 복지를 명분으로 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다.”⁴⁶⁾ 이 판결은 이렇게 사상 자체의 절대적 자유뿐만 아니라 사상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자유라고 하여, 사상의 자유에 대한 철저한 보장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이러한 원칙을 언명하였음에도 실제 사안에 대한 판단에서는 완전히 모순적인 견해를 제출한다. 즉 공산주의사상을 헌법 파괴를 기도하는 사상으로 단정하고 “그 한에서는 헌법 제19조, 제21조에 의한 보장을 채용할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 공산주의사상에는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일본판 ‘전투적 민주주의론’). 당시 일본공산당은 명백하게 합법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이를 외면하면서 ‘공산주의=헌법파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하여 법원은 공산당원 또는 그 동조자들이 자신들의 직장에서 단지 ‘공산주의사상을 가진 자’라는 이유만으로 쫓겨나는 사태를 범죄로 처벌되어야 할 아무런 행위나 현실적·구체적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앞에서 언명한 원칙은 형해화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실제 일본공산당이 합법화되어 있고 그 영향력이 상당하였던 현실과 부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좌의추방’에 대한 다른 방식의 응호가 필요하게 된다. 즉, 大日本筋續貝塚공장에서 일어난 ‘좌의추방’에 관한 판결이다. 이 회사는 ‘단체협약’ 속에 “회사의 기능을 손괴하여 그 사명의 수행을 저해하거나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기준으로 이하를 열거하였다. 즉 “공산주의적 활동에 관련을 갖고 있는 자로서, 1) 사업의 사회

적 사명에 대한 자각이 결여되어 있는 자, 2) 원활한 업무의 운영에 지장을 미치는 자, 3) 항상 선동적 행동을 하여 다른 종업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자, 4) 위의 각 조의 우려가 있는 자”라는 기준이었다.⁴⁷⁾ 이러한 모호한 기준에 의거한 해고에 대하여 1954년 2월 20일 大阪고등재판소의 판결 및 상고심인 1955년 11월 22일 최고재판소 제3小法廷의 판결은, 일본공산당이 합법정당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소위 ‘기업방위론’의 측면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大阪고등재판소 판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재 일본공산당이 합법정당으로서 그 존재를 승인하고 있는 이상, 단지 공산당원 또는 그 동조자이라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바로 이들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러나 위의 각 법조 (노동기준법 제3조와 헌법 제14조:인용자)는 그 신조에 기초한 행위에 의하여 노동자가 부당하게 그 직장규율을 문란하게 하고, 노동능률을 저하시키거나 또는 작업을 저해하여, 타인의 권리 를 침해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가 이 노동자에 대하여 상당한 한도에서 해고나 그 외의 소정의 제재를 가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한 것은, 사회의 공동생활을 확보하여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위에서 당연한 사리이고, 이는 소위 기본적 인권 내지 개인의 존엄에 하등 반하지 않는다.”⁴⁸⁾ 상고심인 최고재판소의 판결도 위 해고가 공산당원 또는 그 동조자인 점 자체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기업파괴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이유에 근거하지 않는 추상적인 危處에 근거한 해고로 강하게 비난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헌법 제14조와 노동기준법 제3조 위반은 문제가 될수 없다라고 하면서 원심을 지지한다.⁴⁹⁾

47) 佐藤功, 「判例に現われた思想及び良心の自由」, 『法律時報』, 29권 1호(1957년 1월), 25면

48) 大阪高判, 昭 29. 2. 20. 判時 118

49) 最裁, 昭 30. 11. 22. 民集 9. 12. 1793

50) 和田英夫, 같은 글, 218면

51) 小林直樹, 「憲法講義」(上), 東京大學出版部, 320면

52) 清水英夫, 「思想・良心および言論の自由 - 資本主義社会における精神的自由」, 一粒社, 1961, 48면

53) 長谷川正安, 「昭和憲法史」, 東京, 岩波書店, 1961

이러한 판결은 훨씬 교묘하게 ‘좌익추방’을 정당화한 것이었다. 만약 실제로는 공산당원 또는 그 동조자이기 때문에 해고하면서도 해고의 명분으로 ‘사상’을 들지 않고 ‘기업방위’를 내세우는 형태를 조장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위 회사의 ‘단체협약’이 내세운 기준 네 가지는 그 표현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공산당원 또는 그 동조자라면 누구에게든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준이었고, 따라서 위의 기준에 의거한 해고는 일본 헌법 제14조와 노동기준법 제3조의 위반이었으며, 사상의 자유에 대한 우회적 침해였음이 분명하였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 국정참가권의 내실을 이루는 정치적 사상·신조의 자유는 특정 기업에 대하여 그 노동력과 더불어 매각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⁵⁰⁾

요컨대 ‘좌익추방’은 “자유나 민주주의와 정면에서 모순”하고 “다시는 모험되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악례”였으며,⁵¹⁾ “사상·언론의 자유에 관한 근대적 원칙의 완전한 부정 위에 선 조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의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암적 행동”이었음에도,⁵²⁾ 당시 법원은 이를 옹호하는데 급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부르조아 민주주의 헌법으로 제정된 일본국헌법의 운용이 점령군에 의한 판례체계에 종속된 결과, 천황제이데올로기를 존속시키고 인권을 억압하는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구 헌법을 탈피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⁵³⁾

한편 미일간에 단독강화조약의 발표를 앞두고 일본 정부는 노동기준법 등의 노동법규의 개악과 점령하 단체규정령 등의 정치입법을 대신하여 각종 ‘치안입법’ 제정을 꾀하였고, 이에 대한

반대운동이 계속되었다. 당시 일본정부는 점령 법규적 치안입법을 소멸시키지 않고 국내법적으로 재편성하려 한 것이다.⁵⁴⁾ 52년 4월 ‘파괴활동 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이에 대한 반대투쟁은 거세게 일어났는데, 항의파업이 일어나고 일본신문협회, 일본펜클럽, 일본문예가협회, 여성단체 등이 반대성명을 냈으며, 4월 일본학술회 의총회도 파방법이 ‘학문·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게 된다. 그러나 파방법은 7월에 성립한다.⁵⁵⁾

동법은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제4조)의 내용을 광범하게 규정한 후, 이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하는 단체가 계속 또는 반복하여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할 염려가 분명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 단체의 시위·행진·집회를 금지할 수 있고, 그 기관지의 인쇄·배포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포괄적 규제를 명문화하고 있다(제5조). 그리고 ‘파괴활동’의 조사 및 규제결정을 행정기관인 ‘공안심사위원회’에 맡기고 있으며, 조서를 작성하는 자는 명을 받은 공안조사청 직원으로 하고 있다(제22조). 또한 각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해당 단체의 담당직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에게 당해 단체를 위한 행위, 동법이 금지하는 일탈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제8, 9조).

이러한 파방법의 특징은 사상의 ‘위험성’을 전제로 한 ‘정치적 예방주의’로 요약할 수 있는 바, 파시즘형법적 본질의 부활이라 하겠다. 먼저 그 정치적 성격은 ‘폭력행위적 파괴활동’이라는 구

성요건에서 드러난다. 제4조 1항 1호는 “정치상의 주의 또는 시책을 추진 및 지지하거나 또는 이에 반대할 목적”을 요구하고 있는 바, 명백하게 ‘정치범죄’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한 정부의 한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이 되고, 형법 이외에 파방법으로 규제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바로 ‘반정부적 반대파’의 진압이 파방법의 목적이요 존재이유임을 보여주고 있다.⁵⁶⁾

두번째 문제점은 ‘교사·선동’을 그 자체만으로 독립된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다.⁵⁷⁾ 동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선동’은 특정행위를 실행할 목적으로 문서, 도서 혹은 언동에 의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위를 실행할 결의를 하게 하거나 이미 결의한 바를 조장시키는 자극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런데 형법이론상 ‘교사·선동’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는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그 위법성을 확정하기가 곤란하고 행위자의 주관이 결정적이다. 그런데 동법과 같은 ‘정치적 교사·선동’의 경우 위법성의 판정기준은 당연히 행위자의 사상의 위험성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정치적 반대자의 언론·사상의 자유는 부당하게 제한·억압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법의침해의 위험성을 이와 같이 교사·선동단계에서 포착하여 하는 것은 파방법의 ‘예방적 성격’, ‘위험형법’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할 것이다.⁵⁸⁾

세번째 문제점은 ‘공안조사관’ 및 파방법을 소관업무로 하는 경비경찰의 ‘사상경찰’적 성격이

54) 이 시기에 ‘파괴방지법’의 전신으로 미국의 ‘맥카린법’을 본뜬 ‘국가공안보안법안’, ‘단체동규제법안’등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들에 들어있던 정치단체의 신고 및 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등이 거센 비판을 받고 철회된 후, ‘특별보안법안’이 제출되어 이 법안이 ‘파괴활동금지법’의 기초가 되었다(天野和夫 等, 「破防法をめぐる國民のうごき」, 『別冊法律時報・破壊活動防止法』; 宮内裕, 「戦後治安立法の基本的性格」, 有信堂, 1960, 4~5면, 55~62면)

55) 한태호, 같은 책, 175~176면

56) 平野義太郎, 「基本的人權の治安立法」, 『法律時報』, 24권 1호(1952. 1월), 11면; 宮内裕, 「戦後治安立法の基本的性格」, 有信堂, 1960, 65면

57) 이 때문에 제1조 ‘목적’에서 형벌법규의補正을 말하고 있다.

58) 宮内裕, 같은 책, 66면, 117면 이하; 杉村・宮内・片岡, 「戦後治安立法の發展と特質」, 『法律時報 増刊・治安立法』, 37면 이하

다. 이는 '정치적 예방주의'의 필연적 귀결이다. 동법의 구조하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없어도 '위험사상'을 가진 단체나 개인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데, 파방법은 이를 위한 '사상경찰'의 활동의 기초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⁵⁹⁾

일본정부가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 파방법이 필요하였던 것은 미일간 단독강화와 안보조약 체결 이후 체제의 새로운 정비가 급박한데다가, 민중운동의 성장이 고양되어 갔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일본정부로서도 파방법이라는 '무리수'를 놓으면서 방벽을 쌓아두었지만, 실제 파방법을 적용한 사건수는 지금까지 8건에 불과하였고, 또한 법원이 파방법위반사건에 대하여는 많은 제동을 걸어나갔다.⁶⁰⁾

예를 들어 철공소의 정문 앞에서 동 철공소노동자 약 69명이 일본공산당의 문건 「우리는 무장의 준비와 행동을 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문서를 약 70부 반포한 1952년 「津사전」의 경우를 보자. 이에 대한 판결은 이 문서가 파방법의 규제에 해당하는 문서임을 인정하지만, 당시 문서의 성질의 인식은 물론 실행하려는 의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과발생의 현실적인 가능성 혹은 개연성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해석되는 고로 행위자가 내란의 죄를 실행하려는 의도외에 결과발생의 현실적인 가능성 혹은 개연성이 존재하고, 그것 인식하여 그 행위를 나타내려는 경우에만"(강조는 인용자)목적이 있다고 언명하고 흠풍사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동법의 남용에 제동을 걸고 있었다.⁶¹⁾ 또

59)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는 東京大ボロ사전(東京地裁 昭29. 5. 11.), 無鶴사전(東京地裁 昭 31. 5. 1.) 石川縣公安調査課(金澤地裁 昭 33. 2. 1.) 등이 있다.

60) 藤永幸治, 外編, 「特別刑法研究」8, 有斐閣, 1981. 3, 319면

61) 津地判, 昭 27. 3. 28. 判時 48

62) 1952년에 「우리는 무장의 준비와 행동을 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핵자위대의 조직과 전술」등의 글을 수록한 공산당 교토부(京都府)위원회 발행기관지 「교토의 깃발(복간 제2호)」를 반포한 사건에 대한 교토지방재판소의 판결(京都地裁三刊 昭 31. 12. 27. 판결: 判例時報 112호). 이외에도 1952년에 「국민의 요구—일본공산당의 신강령」, 「우리는 무장의 준비와 행동을 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핵자위대의 조직과 전술」등의 글을 수록한 일본공산당 岐阜縣위원회 명의의 「山旅案内」라는 팜플렛 반포사건에 대한 岐阜地裁의 판결(岐阜地裁, 昭 34. 4. 9 : 判例時報 183호)도 동일한 입장이다.

63) 김세균,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사회평론」, 1991년 6월호, 사회평론사, 1991, 122면

한 다른 유사한 「京都사전」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졌다.⁶²⁾ 「무장의 준비와 행동」을 촉구하는 문건반포인데 말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津사전」과 동일한 명의의 문건을 반포하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해보라. 이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을까? 여하튼 이러한 파방법남용에 대한 법원의 통제 덕으로 파방법은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며, 또한 일본공산당은 유력한 세력으로 존재하면서 일본의 민주화를 위해 자신의 뜻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일본의 군국주의화의 단적인 예인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안」(PKO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정당은 자민당 등의 우파정당이요, 이에 대해 반대투쟁을 하고 있는 정당은 공산당과 사회당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러한 일본 '좌익'의 반대투쟁에 대해 "단지 좌익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며 자민당의 편을 들어주어야 할까?

IV. 맷음말—우리 사회에서의 사상의 자유의 현상태와 그 보장

이상에서 보았던 냉전시기 서구에서의 '반공캠페인'은, 역사적 현실 속에서 정착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기 자신 속에 공개적으로 억압적인 독점부르조아 정치체제로 이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억압적·권위주의적 자유민주주의체제, 즉 그 속에 '파시즘적 요소'를 내장하면서 합법적 절차를 통해 체제를 파시즘체제로 전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⁶³⁾임을 일깨워서, 동법의 남용에 제동을 걸고 있었다.⁶⁴⁾ 또

워주는 사례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는 좋은 예이다.

그런데 현재로는 위에서 보았듯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될 수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사상을 가진 사람이나 좌익정당의 존재 자체나 활동들을 불법화하고 처벌하지는 않으며, 좌익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이 점에서 '사상의 자유'는 그 자체로는 부르조아적 한계 내에 있는 사안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해방 직후에는 일제하의 개량주의적 민족주의 운동의 '변절'과 민족해방투쟁에서의 혁명적 사회주의운동이 갖던 주동성과 혁신성으로 인하여, 해방정국의 이데올로기 지형(terrain)은 좌파 헤게모니 하에 상당히 좌경화되어 있었다(당시 우파의 대표적인 한민당조차 이를 거부하지 못하였던 바, 그 강령에 독점자본의 국유화를 내걸고 있었다).⁶⁴⁾ 이는 당시 미군정이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중 어느 체제를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에 자본주의라고 답한 사람은 13%에 불과하였고, 사회주의로 답한 사람은 70%, 공산주의로 답한 사람이 10%에 이르고 있었다는 사실로도 증명된다.⁶⁵⁾

이러한 해방정국의 이데올로기의 '좌경반쪽지형화'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경반쪽지형화'로 변화하게 된다.⁶⁶⁾ 좌익이라면 그 동조자는 물론이고 마을 주민 전체가 사살되고 마을이 소각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물리력의 무차별한 살상, 테러, 체포, 검거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일반 민중들은 무력감, 패배감과 함께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감 속에서 비자발적으로 '반공'이라는 가치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다.⁶⁷⁾ 요컨대 한국

전쟁 이후 '냉전'의 온도계가 최저를 달렸던 우리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사상의 자유', '사회주의정당 합법화' 운운하는 자체가 국가보안법위반감이었다. 위로부터 강요된 '반공이데올로기'에 따라 국민 모두는 '사상색맹증', '사상공포증'에 감염되어 버렸던 것이다(여기서 일제하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한 몫을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40여년 전 채만식이 소설 「도야지」(1948)에서 행한 통렬한 풍자는 여전히 생생하다.

"불원한 장래에 死語사전이 편찬된다면 빨갱이라는 말은 당연히 거기에 오를 것이요, 그註釋에 가로되 1940년대의 남북조선에 불세비끼, 멘세비끼는 물론 아나키스트, 사회민주당, 자유주의자, 일부의 크리스챤, 일부의 불교도, 일부의 공맹교인, 일부의 천도교인 그리고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들로서 단지 추잡한 것과 불의한 것을 싫어하고 아름다운 것과 바르고 참된 것과 정의를 동경, 추구하는 청소년들, 그밖에도 ×××와 ○○○당의 정치노선에 따르지 않는, 모든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 빨갱이라고 불렀느니라."

이러한 풍자가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여전히 유의미하다면 한국의 정치수준은 어디쯤인가? 자유민주주의의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다음의 자탄을 들어보자. "우리가 언제 '자유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살아보았는가. 글자그대로 자유민주주라고 하면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고, 사람으로서의 최저한의 위엄을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64) 이에 대해서는 흥기태, 「해방후의 헌법구성과 1948년 헌법성립에 관한 연구」(서울대 석사, 1987); 김재홍, 「한국의 좌우이념과 해방후 정당활동에 관한 연구」(서울대 박사, 1987) 손호철, 「한국정치학의 새구상」, 풀빛, 1991, 157~159면을 참조하라.

65) 이성근, 「해방직후 미군정지하의 여론동향에 관한 분석」, 「국제정치논총」, 25집(1985), 119~131면

66) 손호철, 같은 책, 159~160면

67)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정치론」, 백산서당, 1989, 203~204면

보장되는 질서일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질서는 아직도 헌법에만 쓰여져 있지 현실에는 없다.”⁶⁸⁾ 요컨대 한국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반공기지의 확보의 필요에 의해 구축된 자유민주주의”,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떠받쳐진 자유민주주의”에 불과했던 것이다.⁶⁹⁾(여기서 우리는 “제3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바람직한가, 그리고 가능한가?”⁷⁰⁾ 하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반공이데올로기는 80년대 중반 이후 노동자계급운동을 필두로 한 민중운동의 성장과 맞물리면서 민중들 사이에는 많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도 반공이데올로기는 현존 사회주의의 봉괴와 북한사회의 문제점, 북한의 핵개발 등을 호재로 하여 재생산되고 있다. 생각컨데 ‘국제적 냉전의 종료’는 ‘국내적 냉전의 종료’로 이어져야 하며, ‘특수상황’을 들어 ‘원칙’을 훼손하는 악습은 없어져야 한다.⁷¹⁾ 이러한 냉전과 악습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평화와 원칙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게 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헌법상의 자유를 확대하기 보다는 그 자유의 제한을 근거지우는데 오히려 더 촛점을 맞춰오지는 않았던가?

현재에도 정부는 국외의 사회주의자는 ‘평화’를 나누면서, 국내의 사회주의자에 대해서는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의 자유’의 부재상태, 사회주의자에 대한 여전한 무조건적 탄압 등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극우·파쇼’와 ‘냉전’의 틀 내에서 맴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8) 한상범, 「인권-민중의 자유와 권리-」, 교육과학사, 1991, 150면

69) 한지수, 「한국사회 지배이데올로기의 형성과 재생산」, 「80년대 한국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 역사비평사, 1988, 401면

70) 손호철, 「제3세계와 자유민주주의」, 「사회평론」, 1991년 6월호 참조

71) 이에 대해 양동안씨는 “비록 구미에서는 냉전이 끝났을지도 모르나 한반도에서는 이제부터 냉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서, “좌익은 활보하고 우익은 고개숙이는 오늘의 우리사회”를 개탄하면서 “우익총궐기”를 주장하고 있다(양동안, 「우익은 죽었는가?」, 「민주주의와 좌우이념논쟁」, 등에, 1988, 84, 88, 99면; 원발표지는 「현대공론」, 1988년 8월호). 양씨는 지금까지 한반도에서의 냉전은 별개 아니고 이제부터 본격화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도대체 그는 어느 정도 냉전이 강화되어야, 그리고 우익이 얼마나 활개를 쳐야 성이 찰지 궁금하다.

72) 양동안, 같은 글, 84, 87면

73) 和田英夫, 같은 글, 215~216면

74) 그리고 현시기 특히 유의할 점은 국제적 정세의 변화, ‘보수대연합’의 성립과 맞물리면서, 이후 남한 정부

나치스가 집권한 후 처음에는 사회주의자를 탄압하였다. 이때 자유주의자와 기독교인들은 남의 일인 양 첨묵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자가 궤멸된 후 즉각 탄압은 자유주의자와 기독교인들에게 닥쳐왔고, 그 결과는 민주주의의 완전한 파괴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현재 우리 국민들이 사회주의자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좋은 시사점을 준다. 현시기는 자신이 사회주의자

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볼테르(Voltaire)의 말을 되새기며 ‘사상의 자유’의 침해, 사회주의자에 대한 탄압에 대한 기성의 사고를 전환해야 할 때이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당신편에서 싸울 것이다.”

는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하고 대신 남한 내의 변혁적 진보진영은 여전히 처벌할 수 있는 대체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보법에 대한 국내외적 저탄을 모면하는 대신 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 대체입법의 내용은 과거 〈평민당〉의 ‘민주질서보호법안’이 이를 시사한다. 동법안은 북한과의 ‘평화공존’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남한 내의 진보진영을 ‘민주질서위해’라는 이유로 처벌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